

新 목민심서

품격있고 지혜로운 서울시 공직자가 되는 법

서울특별시

-
- 첫 출근, 그때 그 마음으로 010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왜 新목민심서인가? 012
 - ‘新목민심서’ 품격 있게 읽는 방법 016

목차

1장. 입문(入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 01. 사(私)를 등지고 공인으로 가는 길 022
공직에 입문했을 때
- 02.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단서, 복장 028
출근을 준비할 때
- 03. 일 잘하는 사람의 평범한 비결 032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할 때
- 04. 내 업무시간은 시민의 시간 036
근무시간 중 일을 할 때
- 05. 당신은 프로 공직자인가? 040
업무에 소극적이 될 때
- 06. 3·3·3의 비밀 044
전문성을 키우고 싶을 때
- 07.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유 048
공직생활이 힘겨울 때
- 08. 진솔한 대화는 꼬끼리도 이긴다 052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을 때



入門

2장. 위민(爲民),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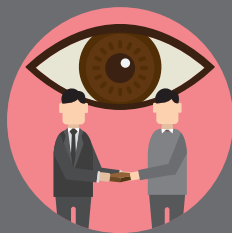
- 09. 친절은 매너가 아닌 필수 058
 전화를 받을 때
- 10.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이 나온다 064
 사무실에 방문한 시민을 응대할 때
- 11. 섬기는 마음, 시민에게 닿는다 070
 시민의 민원을 처리할 때
- 12. 시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다 076
 불만 민원을 처리할 때
- 13. 지켜야 할 것은 내 가족만이 아니다 080
 재해·재난 시 비상근무를 할 때

爲民



3장. 청렴(清廉),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 14. 세상은 좁고 직무관련자는 많다 086
직무관련자를 만날 때
- 15. 달콤한 부패 바이러스, 당신도 예외 없다 092
금전 유혹을 받을 때
- 16. 받아도 되는 건지 헷갈릴 때는 받지 마라 098
금품이나 접대의 기준이 모호할 때
- 17. 편하면 선물, 불편하면 뇌물 104
대처할 겨를도 없이 금품을 받았을 때
- 18. 기쁜 일 · 슬픈 일, 진심 하나면 된다 110
경조사가 생겼을 때
- 19. 동료는 나의 거울 116
조직 · 동료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清廉

4장. 공정(公正),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 20. 청렴, 원칙 한 걸음부터 124
원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 본다고 느껴질 때
- 21. 청탁 거절의 법칙 128
청탁을 받았을 때
- 22. 끼리끼리 특혜, 예외 없이 족쇄가 된다 134
가족·지인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청탁할 때
- 23. 내부정보 활용은 명백한 범죄 140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테크를 할 때
- 24. 굴복하면 더 큰 낭패가 뒤따른다 144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 25. 두려워야 할 대상은 정치인이 아니다 150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을 때

公正



5장. 검약(儉約), 시민의 세금을 귀히 쓰다

- 26. 세금은 시민의 재산 156
예산을 집행할 때
- 27. 당신도 모르는 사이, 세금 절도범이 된다 162
사무용품을 사용할 때
- 28. 업무추진비는 개인 급여가 아니다 166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 29. 공직자의 초과근무 채우기 캠페인? 174
초과근무를 할 때
- 30. 출장여비는 당연히 받는 수당이 아니다 180
출장을 갈 때



儉約

6장. 절제(節制), 자신의 품격을 좌우한다

31. 당신은 서울시의 대표선수
외부회의 · 토론 · 강의를 참석할 때 188
32. 공무원, 영리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분야의 일도 하고 싶을 때 194
33. 해외출장도 업무의 연장이다
외국출장 · 외국연수를 갈 때 200
34. 정치와 거리 두기
정치 성향을 표현하고 싶을 때 204
35. 내 신앙만큼 남의 신앙도 중요하다
종교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 212
36. 음주운전 세 번이면 '아웃'
술을 마셨을 때 216
37. 심심풀이가 패가망신에 이른다
도박의 유혹에 빠질 때 220
38.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성희롱을 접했을 때 224

節制



7장. 퇴직(退職),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39.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232
퇴직을 앞두고 노후가 고민될 때

40. 존경받는 공직자의 뒷모습 238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 서울시 공직자가 간직해야 할 다섯 가지 가치 244
- 에필로그 248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252



退職

첫 출근

그때 그 마음으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실함, 업무능력, 일에 대한 열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어서 첫 출근시에 가졌던 첫 마음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는 성실과 능력은 사익추구가,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는 열정은 독선이 되어 시민들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직에 막 입문한 새내기부터 퇴직을 앞둔 직원까지 서울시 공직자면 모두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인사말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너무 오래 귀가 따갑게 들어온 내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매일 밤 잠들면서 다짐해야 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결코, 어느 때 단 한 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의 금과옥조입니다.

공직자의 길은 결코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니고 권력의 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과 봉사의 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쳐진 삶입니다.

부디 이 책을 읽는 모든 서울시 공직자가 시민을 섬기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공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재직 중일 때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남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왜 新목민심서인가?

당신은 시민 앞에서 떳떳한 공직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하면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부정 부패,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 주로 부정적인 표현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 그 누구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자신이 왜 공직자가 되었는지, 공직자로서 충실하게 처신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자기 가치관이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0여 년 전에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지으신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에는 다산 선생이 직접 몸으로 겪은 당시 지방관료들의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공직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지은 시 ‘애절양(哀絶陽)’을 보면, 당

머리말



시 군정이 심히 부패하여 병역에 대신하는 군포로 죽은 사람의 몫까지 세금을 내게 하고 갓난 아이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니 이를 원망하며 자신의 양물을 자른 백성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에는 백성의 피폐한 현실을 함께 슬퍼한 그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의 질고(疾苦)를 안타깝게 여기고 뼈저리게 고뇌하면서 그 개선 대책을 강구한 ‘애민(愛民)’ 정신이 목민심서의 구석구석에 담겨 있습니다.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지방관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목민심서를 지으신 것을 본받아, 서울시에서는 현재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부패와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맨 처음 임용장을 받아들 때부터 정년퇴직 이후까지 지켜야 할 뚜렷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얻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향해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당호인 ‘여유당(與猶堂)’은 노자(老子)〈도덕경〉의 한 대목인 “여(與)함이여, 겨울 냇물을 건너듯이, 유(猶)함이여,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라는 글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겨울 냇물을 건너듯이 사방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목민심서에도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외(畏)’ 한 자뿐이다. 의(義)를 두려워하고 법(法)을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공직자에게도 유용한 메시



지입니다. 공무원에 임용되었다고 모두가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시작하지만 도중에 명예롭지 못하게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자는 더 이상 공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공직자들은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 앞에서 떳떳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시민 앞에서 떳떳한 공직자입니까?

‘新목민심서’ 품격 있게 읽는 방법

이 책은 모든 서울시 공직자의 바람직한 몸가짐과 마음가짐, 그리고 업무와 관련 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新목민심서〉는 모두 7장, 40개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마다 공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행동기준, 실제 발생되었던 부패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안내



1장



입문(入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위민(爲民),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업무 중에 갖추어야 할 매너, 대응 요령 등을 소개합니다.

3장



청렴(清廉),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청렴한 공직자로서 부패를 막고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4장



공정(公正),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공직 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청탁, 비리 유혹, 압력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지혜를 보여 줍니다.





5장

儉約

검약(儉約), 시민의 세금을 귀히 쓰다

공무 중 사용하는 모든 재화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임을 알고 정당하고 알뜰하게 써야 힘을 강조합니다.

6장

節制

절제(節制), 자신의 품격을 좌우한다

공직생활 중의 대외적인 활동 시 품격 유지를 위해 명심해야 할 행동규범들을 다루었습니다.

7장

退職

퇴직(退職),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와 퇴직 후의 처신에 대한 예시를 통해 명예로운 공직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는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신규 공무원에게는 앞으로의 바른 공직생활에 대한 나침반으로, 기존 공무원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비춰보는 거울로 유용하게 쓰여,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공직생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수록된 부패사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부패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入

門

1 장 | 업무, 마트가집이 중요하다

01

사(私)를 등지고 공인으로 가는 길

공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는 그 첫째가 청렴(清廉)이요,
둘째가 공정(公正)이며, 셋째는 직무에의 성실(誠實),
마지막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랑인 애민(愛民)이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공직에 입문했을 때

합격! 드디어 공직에 들어섰다.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부모님께서도 싱글벙글하신다. 옛날로 치면 과거에 급제한 것인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시민의 손발이 되어 일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임이 틀림없다. 어떻게 하면 더 충실히 시민을 섬길 수 있을까?



공직자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 직업에나 직업윤리가 있듯이 공무원의 세계에도 특유한
공직윤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직윤리의 큰 의미는 ‘공무원
(公務員)’이란 세 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
습니다. 그럼 공무가 무엇인지 ‘공(公)’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까
요? ‘공(公)’이란 한자는 八(팔)과 厶(모)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八은 ‘서로 등을 돌리다, 서로 배치되다’라는 뜻이고, 厶는 私
(사)의 본자(本字)로 이를 더하면 ‘사(私)를 등지고 대중과 공
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듯 공(公)이란 글자 속에
는 개인적인 이익을 등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
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역할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직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성실
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9조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의 2 종교중립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53조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를 압도하고 있고, 양심과 명예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전문적 업무능력과 아울러 그 전문 능력이 정당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공직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돈을 벌기 위해, 적당히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또는 남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갖춰야 할 8가지 기본 자질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8가지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청렴해야 한다.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다. 공무원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들 앞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따라서 다른 직업과는 완전히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

늘 학습하고 공부해야 한다. '큰 덕을 가지면 자리는 저절로 얻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자리에 탐욕을 가지고 실력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만 탐한다. 그렇지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덕을 쌓으면 자리는 저절로 온다. 자기 그릇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3. 자기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량과 수준만큼 서울시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4.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소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단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내야말로 공직에서 필요한 덕목이다.

5. 자신의 신념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신나고 즐겁게 시작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명령이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명령과 지시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6. 팀워크가 중요하다.

서울시 업무는 너무나 방대하여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일을 성취하는 데 너무나 소중한고, 그래야 동료와 상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다. 독불장군은 어디에도 존재하기 힘든 법이다.

7. 시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힘,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곧바로 바꾸게 된다. 새로운 변화와 창조는 늘 필요하고 다른 선진 도시들이 따라오는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8. 초심을 간직해야 한다.

첫 출근 할 때의 그 마음을 간직하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스스로 대견해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2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단서, 복장

일상 생활을 절도(節度) 있게 하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장중(莊重)하게 대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령(首領)의 도(道)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출근을 준비할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복장 간소화를 실시한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를 원망하던 차에, ‘오호라, 잘됐다.’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집에서 즐겨 입던 짧은 치마를 골라 입는다. 다리도 길어 보이고 무엇보다 시원한 게 마음에 쏙 든다. 친구들도 출근할 때 요즘 유행하는 짧은 치마를 입고도 일만 잘하는데 나라고 못 입을 게 뭐야. 안 입으면 나만 손해지.

웃은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입은 옷에 따라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 또한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정장에 넥타이를 한 차림, 여름이면 흰 와이셔츠 일색인 것이 공무원의 제복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림이 정갈한 이미지로 신뢰를 주기도 했지만 경직되고 틀에 박힌 사고에 머물게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도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위 유지와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성 있는 복장은 품위를 손상하고 근무 기강이 흐트러져 보이게 합니다. 특히, 민원 등 대민 담당 공무원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직한 평소 복장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 상의는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컬러 셔츠, 하의는 정장 바지, 면바지 등 - 여성의 경우 상의는 컬러 유무, 넥라인과 관계없이 단정하게 입되 하의는 정장 스커트나 바지
적절하지 않은 복장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등 나만의 개성 표출 - 과도한 노출로 자신의 섹시미 자랑 - 화려한 복장으로 재력 과시
넥타이를 매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국내외 손님을 접견하는 경우 -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시원차림을 하는 기간(5~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답한 재킷 입지 않기, 넥타이를 매지 않고 편안한 옷 입기, 통기성과 여유가 있는 소재의 옷 입기, 활동적이고 편한 운동화 신기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공무를 처리하는 직업인 만큼 기본적인 예의와 단정함을 지녀야 합니다. 법관의 법복, 가톨릭 신부님과 스님 등 종교인의 복장처럼 공직자의 복장 또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이 유연한 마음가짐, 밝은 표정과 어우러진다면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눈높이 행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03

일 잘하는 사람의 평범한 비결

밝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세수하며 옷을 단정히 입고
띠를 두른 후 조용히 앉아서 정신을 함양한다.

얼마쯤 있다가 생각을 풀어내어 오늘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한다.

제일 먼저 무슨 공문을 처리하고 다음에는 무슨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음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되,
사욕(私慾)을 끊어버리고 하나같이 천리(天理)를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다산 정약옹 선생〉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할 때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겁지겁 사무실에 들어와 앉았다. 머리가 멍하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우선 커피나 한 잔 해야지. 자판기 앞에서 만난 동료와 어제 있었던 스포츠 경기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아! 오늘 보고할 서류가 있는데 아직 초안도 못 잡았다. 아참! 오후에 나갈 관내 시설물 실태조사 계획도 얼른 짜야 하는데. 울리는 전화를 받으니 재무과에서 지난 번 출장비 정리 내역을 보내라고 성화다.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지?

스티브 잡스에게 한 기자가 그의 창의력의 원천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만들어낸 당신의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창의력과 열정은 매일 아침에 하는 명상에서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20살 때부터 명상을 하며,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상이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는 미국 UCLA 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그 누구보다 열정과 창의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조금 일찍 출근하여 하루의 계획을 차분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태도를 가다듬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유쾌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루 일과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습관을 권합니다.

- 책상 위 물건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차분하게 마음 가다듬기
- 가볍게 두 손을 깎지 끼고 머리 위로 가지개 펴며 심호흡 하기
- 수첩에 오늘 할 일들을 메모하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구성하기
- 중요도와 긴급도를 감안하며 하루 동안의 업무시간표 짜보기
- 중요한 보고, 부서 공동 업무 등 유념할 것 살피기
- 옆의 동료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살피며 배려하기

공무원 입문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의 심호흡과 ‘시험공부 계획표 짜기’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생각 없이 무작정 덤벼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접근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계획이 있을 때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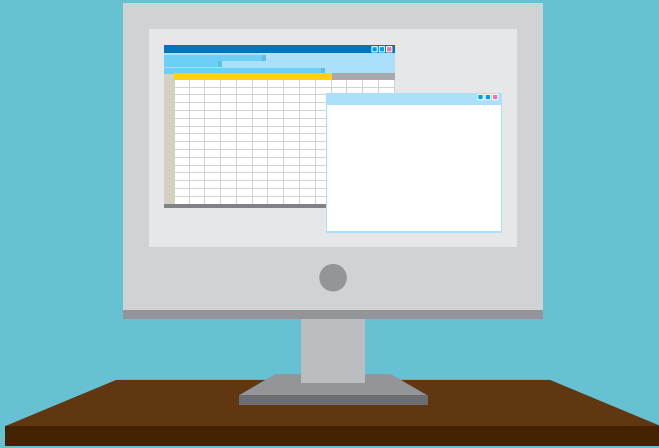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도 성과가 없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늘 여유가 넘치면서도 성과를 내는 직원의 차이는 바로 계획입니다. 오늘도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04

내 업무시간은 시민의 시간

인간에겐 항상 두 가지의 뜻이 상반되게 있어서
동시에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것이 인간과 귀신, 선과 악의 분별이며
인심(人心)과 도심(盜心)의 싸움이며 의(義)가 이기느냐 사욕(私慾)이
이기느냐의 판별이다. 이에 맹렬히 반성하고 힘껏 극복한다면
도(道)에 가깝게 된다.

〈다산 정약옹 선생〉



근무시간 중 일을 할 때

은행 대출 때문에 직접 가야 하는데 이거 야단났다. 그래, 방법이 있지. 관내 출장을 나간다고 하고 일을 보면 되겠군. 그리고 집사람이 부탁한 장인어른 생신 선물도 백화점에 들러서 사 와야겠다. 공무원 생활은 너무 바빠서 말이야. 낮에만 가능한 이런 집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융통성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밀린 일은 야근하면 되지 뭐.

근무시간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
업무 수칙입니다. 공무원을 영어로 ‘public servant’라 하듯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로서 ‘정실 의무’는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
러나 공직기강 점검을 하다 보면, 심각하게 출근 시간을 어기
는 지참출근, 무단 자리이탈과 무단결근, 연가 및 병가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되곤 합니다.

이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위치 근무’가
생각보다 많이 어겨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엄격히
‘직장이탈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
다. 이 의무는 정규 근무시간뿐 아니라 시간 외 근무시간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공무원 아직도 있다! (실제 적발 사례)

- 근무시간 중 당구를 치거나 댄스교습장, 요기학원에서 취미생활을 한 공무원
- 근무시간 중 동호회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
- 동료와 점심을 먹고 근무시간까지 차를 마시며 티타임을 가진 공무원
- 근무시간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공무원
- 근무시간에 사무실 근처에서 사우나를 즐긴 공무원
- 근무시간에 사무실을 떠나 이성 친구와 인근 DVD방을 간 공무원
- 근무시간 중 공무 출장으로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상갓집을 다녀온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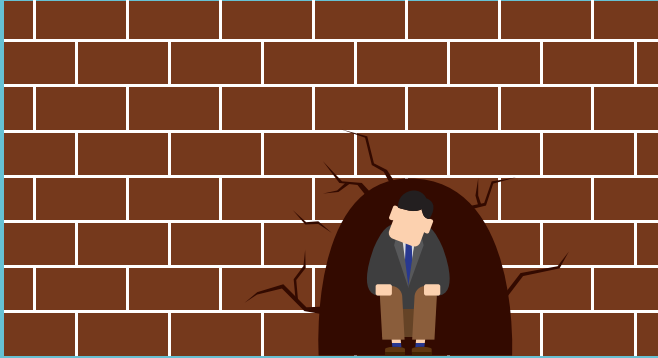
“모든 사람이 따라 해도 좋은 행동만을 하라.”고 철학자 칸트는 권고합니다. ‘나 하나쯤 이탈해도 전체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 하는 생각이 조직을 허물어뜨립니다. 저마다 같은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에나 기강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에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05

당신은 프로 공직자인가?

늘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일을 잘 아는 체하고
아랫사람에게 물기를 부끄러워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놔둔 채, 문서 끝에 서명만 착실히 하다가
아전(衙前)들의 술수(術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업무에 소극적이 될 때

내게 도심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 문제를 해소할 아이디어가 있다. 그런데 이를 내놓기가 망설여진다. 내 소관 업무도 아닌데, 기안을 올리려면 수많은 현장 조사와 효과 예측까지 내 책임으로 해야 한다. 그러다 태도 없는 안이라고 면박 받으면 무슨 창피인가? 반대로 좋은 안이라고 채택되어도 실행 단계에서 담당 부서로 업무가 넘어가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꼴 아닌가?

“일을 많이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공직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책임추궁과 비판을 받게 될 소지가 높고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은 나중에 문제될 여지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잘못된 관념입니다.

그래서 흔히 공무원 하면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란 말을 떠올립니다. 무슨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 관례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는 공무원 사회를 나약하게 만드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에겐 업무방치(지연), 업무전가, 선례답습, 법규빙자 등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하면 걸리는 4가지 병

<p>1. '게으름 병' 업무방치(지연)</p>	<p>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거나, 행정공백을 가져와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경우</p>
<p>2. '미루기 병' 업무전가</p>	<p>구성원이나 부서 간에 업무분담을 둘러싸고 이견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p>



3. '무작정 따르기 병' 선례답습	법령이 바뀌거나 폐지되었는데도 구법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창의적 개선 노력 없이 종전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임자나 전년도의 처리 사례를 답습하는 경우
4. '핑계 대기 병' 법규빙자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규정에 없다는 핑계로 행정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지혜로운 공무원은 일을 통해 성장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업무를 피하거나 두려워하기 보다는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고민하고 전문 서적을 찾아 읽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던 일도 나중에는 실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No Stone was left unturned.”, 일을 할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큼니다.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앞선 생각, 앞선 행동으로 주도면밀하게 움직이는 21세기형 프로 공직자상을 새로 정립해 나갈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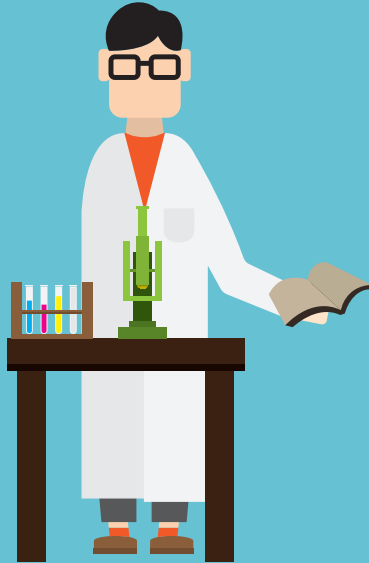
06

3·3·3의 비밀

요즘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책력(冊曆) 이외의 다른 책은 한 권도 행장(行裝)에 넣지 않는다. 임지에 가면 으레 많은 재물(財物)을 얻게 되어 돌아오는 행장이 무겁기 마련이니, 한 권의 책도 부담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슬프다, 그 마음가짐의 비루(鄙陋)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목민(牧民)인들 제대로 할 것인가!

〈다산 정약용 선생〉



전문성을 키우고 싶을 때

요즘 들어 맡은 업무에서 내 한계를 느낀다. 잘 모르는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니 업무에 흥이 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는 남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막상 실무에 부딪치니 모르는 것 투성이다. 그러니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처음 공직 생활에 몸담았을 때의 뿌듯함과 시민을 위한 열정마저 식는 듯하다. 담당 분야에 더 정통하고 전문적이 되기 위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처리절차를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무원은 그 누구보다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세 명 이상을 만나면 자신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이들은 문헌조사를 하고 문제를 여러 이슈로 세분한 다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특히 현장에서 애로와 고민을 듣습니다. 애초에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컨설턴트가 3개월 후에는 평생 그 일에 종사해온 경영진에게 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 공무원에게 3·3·3원칙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3·3·3 원칙

“공무원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싶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3명을 3시간씩 인터뷰하면서 3개월만 고민해 보자. 그러면 아마도 최고의 정책이 나올 것이다. 물론 3명이 아니라 10명이면 더 좋다. 이때 인터뷰할 대상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다. 그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고 사진 찍고 둘러보면 감이 온다. 현장은 많은 영감과 상상력을 주고 우리가 가진 선입관을 바꿔놓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 가능한 수단을 찾는 힘이 창의력이다.** 창의란 세상에 없는 기발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찾아 막힌 곳에 접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3·3·3원칙은 협력하기, 학습하기, 그리고 현장을 중요시하기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혼자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료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협업의 과정에서 사람과 일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 역시 공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모든 답과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만 아는 사람은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07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유

스스로 높다고 여기면 남이 끌어내리고
스스로 낮다고 여기면 남들이 끌어올려 준다.

〈다산 정약용 선생〉



공직생활이 힘들을 때

공무원이 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 처음 공직에 입문했을 때의 설렘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하다. 공무원이라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출근하기가 다반사다. 이젠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도 별로 와 닿지 않는데,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걸까?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강도는 대단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소소한 보고서도 만들고, 자료까지 챙기느라 야근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도 보수는 하는 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니, “내가 왜 이려고 사나?” 하는 회의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고민은 굉장히 건강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음미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이미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로 뜻입니다. 앞선 고민은 열정을 가져 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민입니다.

우울한 생각에 가라앉아 억지로 일을 하면 신이 나지 않고 모든 것이 싫증만 납니다.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돌이킨다면, 힘들고 골치 아픈 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리 당찬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업무 추진 방법도 바꾸세요. 조금은 더 유연하게 허리를 풀고 또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고 잠깐은 여유도 부립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락을 리크리에이션 (Re-creation)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심이기에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징검다리 휴가를 이용하라’, ‘법정휴가를 반드시 찾아 이용하라’, ‘실·국·본부장님부터 휴가를 가라’ 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는 결코 서울 시정에 공백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휴가를 통해 좀 더 충실히 일하게 하고자 하는 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고, 이 일, 이 자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품격있는 고민을 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08

진솔한 대화는 코끼리도 이긴다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和睦)하고 예의(禮儀) 있게 대화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웃 고을 수령과는 서로 형제의 우의(友誼)가 있으니, 저쪽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틀어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을 때

내 동기가 팀장님과 화기에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팀장님이 그 동기를 편애하는 듯 하다. 그 친구가 손이 빠르고 말주변도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인 나는 열심히 해도 별로 돋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하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 사이의 인간관계가 담겨있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개인과 조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직장인 퇴사 이유 중 1위가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그 문화의 중요성을 대변합니다. **공과 사의 구분, 책임과 권한의 구별, 인격의 존중 같은 기본 가치가 살아 있지 않으면 그 조직은 상호비방과 중상모략, 관계 악화로 얼룩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격언입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통해 현명한 인간관계를 배워 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 덩어리 부하 직원도 저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워 내는 자세가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고 자신과 조직의 좋은 성과로 이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마음가짐

- 사람마다 저마다의 특성과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다.
- 상대방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돕는다.
- 상대방의 약점이 보완되도록 돕는다.
- ‘나 중심’의 생각보다 ‘상대방 중심’의 생각을 한다.





-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배려한다.
- 매사에 격려하고 지지한다.
- 적극적으로 묻고 적극적으로 들어 준다.

모든 공(功)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 남을 홍보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최근 조사된 ‘직장인 꼴불견’도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말 안 통하는 사람’, ‘퇴근 직전 업무 폭탄 메일 보내는 상사’, ‘뒤에서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논어 자로편에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제 발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 들어 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항상 웃으면서 밝게 말하는 사람에게 ‘왕따’란 있을 수 없습니다.



爲
民

2장 | 위민, 공직이 존재하는 이유다

09

친절은 매너가 아닌 필수

예(禮)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되고 의(義)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되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아야 군자라고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전화를 받을 때

전화한 시민 : “여보세요, 시청이죠? 여기 서울숲 공원
인데요, 수도관이 터져서 난리입니다.”

시청 직원1: “아 그럼,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셔야죠.”

시청 직원2: “아, 여기가 아니고요, 도시안전실로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 직원3: “아, 공원이라고요? 그건 공원녹지국
담당인데요.”

짜증 난 시민: “그러지 마시고, 시장님 바꿔 주세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시민의 문의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화 응대와 관련하여 시민이 겪는 불편 중 하나는 ‘전화 돌리기’입니다. 담당 업무가 아닌 전화는 담당자를 바꿔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담당자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해당 부서나 팀으로 무작정 전화를 돌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담당자를 찾기까지 서너 번 또는 그 이상 전화를 돌리는 것을 경험하는 시민이 적지 않습니다.

무작정 ‘전화 돌리기’에 시민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정확한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담당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부서의 대표 전화를 알려주거나, 연락처를 적어두고 정확한 담당자를 찾아 직접 전화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 응대의 3요소

목소리 조절	전화 통화 후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면 실제 말의 내용(14%)보다는 억양, 어투, 발음, 톤(86%)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은 적당한 속도로, 발음은 정확하게 한다.
통화 태도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전달되는 목소리만으로도 상대방은 나의 심리 상태, 자세, 지적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다. 메모와 복창은 기본,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 받는 데에만 집중한다.
통화 예절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응대하면 통화예절은 어렵지 않다. 첫인사와 끝인사는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시민의 말을 끊는 것은 금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아끼지 말자.

전화상으로 친절을 표현하는 방법은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말투와 알기 쉬운 단어를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전화 한 통일지라도 빨리 끊으려고 하거나 형식적으로 응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화 통화이지만 당신의 성의와 친절은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전화 응대법을 소개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

- 첫인사 후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 홍길동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밝은 음성으로 한 톤 높여 말한다.

- 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요점을 메모한다.

- 숫자, 고유명사 등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확인한다.

담당자가 없을 때

- 담당자가 부재중인 사유를 밝히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메모를 남겨 사후에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죄송합니다만, 홍길동 주무관은 출장 중입니다. ○시(일)경에 돌아올 예정입니다만,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메모를 남겨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메모한 내용을 직접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설명한다.

- 책상 위에 둘 경우는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담당자를 연결해 줄 때

-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확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 후 전화를 바꾸도록 한다.

예 :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홍길동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으신다면 홍길동 주무관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 만일 업무담당자와 연결이 늦어지면 이유를 밝히고 이 쪽에서 다시 걸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기로 한 경우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메모를 해둔다.

끊기 전에

- 더 도와 드릴 일은 없는지 확인하고 소속과 이름을 다시 한 번 밝힌 후, 마무리 인사를 한다.

예 : “더 필요한 일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과 홍길동이었습니다.”

- 반드시 시민이 전화를 끊은 다음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10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이 나온다

손님 접대는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손님을 대접하는 데 여러 물품이 너무 후하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요,
너무 박하면 환대하는 뜻을 잃는 것이다.

선왕(先王)은 이것을 위해 절도에 맞게 예(禮)를 만들어
후한 경우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고 박한 경우라도 줄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예를 만든 근본을 소급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



사무실에 방문한 시민을 응대할 때

점심 직후 보고할 사항이 있어 점심도 마다하고 보고서 작성에 열중해 있는데, 한 시민이 사무실에 들어와 두리번거린다. 회사원이라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없다고 당장 처리해달라고 한다. 다른 직원은 없고 이를 어쩐다? 점심시간이니 업무시간까지 기다리시라고 해야 하나? 아예 무시하고 앉아 있을까? 누가 좀 빨리 와 줘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는 시민을 응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중함이 배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외모, 옷차림을 기준 삼아 차별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시민이 찾는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는 사유를 알아보아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모르겠다.”는 대답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잠시 기다리게 되는 경우, 대기하는 곳으로 안내하여 멀뚱히 서 있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시민 응대법

맞이하기	-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이름을 밝힌 후 자리를 권한다.
용무확인	- 시민의 방문 목적을 확인한다. 만일 담당자가 아니면 해당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업무담당자가 용무 중일 경우에는 시민에게 양해를 구한다. 이때 업무담당자는 동료직원과 농담을 하거나 사적인 전화로 시민을 기다리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p>응무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답변한다. 이때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불성실한 상담이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p>응대 종료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상담이 만족스러웠는지 여부와 추가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을 마치고 돌아갈 경우 문 앞까지 나가 배웅인사를 한다.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서울시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섬기는 마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서울시를 찾는 시민에게 위안이 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1. 시민을 화나게 하는 공무원의 7가지 말과 행동

시민을 짜증나고 화나게 만드는 공무원의 행태	시민을 짜증나고 화나게 만드는 공무원의 말
1. 무관심 나와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	1. 부정의 말 “없어요.”, “몰라요.”, “안돼요.” 등
2. 무시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회피함	2. 핑계의 말 “담당이 아니라서”, “일이 바빠서” 등
3. 냉담 차갑고 투명스럽게 대함	3. 무례한 말 “뭐요?”,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등
4. 어린애 취급 시민을 어린애와 같이 알보는 태도	4. 냉정한 말 “업무시간이 끝났는데요.”, “그건 A님 사정이죠.” 등
5. 로봇화 인사나 응대가 완전히 기계적인 것	5. 따지는 말 “그건 A님 잘못이지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등
6. 규정 제일 규정만을 따지는 경직된 자세	6. 권위주의의 말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규정이 그래요.” 등
7. 발뺌 내 담당이 아니라고 업무를 떠넘기는 것	7. 무시의 말 “그게 아니죠.”, “그건 A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등





2. 성공으로 이끄는 대화법

시민이 공무원을 대할 때 불쾌해지는 표현이 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규정이 원래 그래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하는 표현이다. 또, ‘고개 숙이고 시선 마주치지 않기’, ‘못 들은 척하기’ 등의 태도도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공무원인 나 자신도 다른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볼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불쾌할 것이다. 나부터 먼저 시민에게 전하는 어투를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시민과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활용해 친절하게 대응하자.

1. 맞장구를 친다.

- 타이밍을 맞춰서 짧게 긍정의 말에만 맞장구를 쳐서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등

2. 관심을 보여 호감을 유발한다.

예: “아(네, 음, 어)~”, “그러셨군요.” 등

3. 쿠션어(정중한 표현)를 사용한다.

예: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등

4. 복창하여 확인한다.

- 재확인은 관심을 표현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11

섬기는 마음, 시민에게 닿는다

장사꾼이 모이는 곳의 민심은 간교하고, 농사꾼이 사는 곳의 민심은
질박하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형세를 살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시민의 민원을 처리할 때

듣고 보니 딱한 일이다. 아무 탈 없이 수십 년을 살아 온 터전인데, 도시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살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게 됐다는 할머니. 자식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보니 안쓰럽기 그지없다.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 누구만 예외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 드려야 할 텐데.

‘진심이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민원인들의 감사 메시지를 보면 어떤 때에 시민이 만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었다.”, “처리되는 과정을 수시로 알려주는 배려가 좋았다.”고 하며 시민의 처지에서 노력한 공무원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담당 분야가 아님에도 해당 법까지 일일이 찾아 준 공무원에 감동했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기본자세

-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

시민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자세와 친절한 상담이 민원해결의 요인

- **부정적 접근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접근한다.**

“안됩니다.”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로 가능한 방법을 안내

- **민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

개별적인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구제할 방법으로 법과 원칙을 개선

- **민원인의 신분을 보호한다.**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민원에 대한 잘못된 대응 vs 올바른 대응

잘못된 대응	올바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 내가 옳다는 것을 시민에게 증명하는 것 -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에게 보이는 것 -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 - 염려와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

시민 감동을 위해 담당 직원은 시민의 민원 사항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적절히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다시 질문하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고, “아, 그러셨군요.” 하고 관심을 두면 더욱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요구사항과 이유를 요약하여 시민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이 다시 문의할 때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1. 민원처리 4대 원칙

1.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명확성 및 공개성

- 관련 법 규정과 형식, 절차가 복잡함에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준·절차를 애매모호하게 적용한 적은 없는지?

2. 친절도

- 문의사항에 무뚝뚝한 표정, 말투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적은 없는지?
-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지?

3. 공정성

- 담당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시민의 지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지?
- 담당자 재량으로 동일한 민원을 다르게 처리한 적은 없는지?

4. 이의제기 수월성

- 이의제기 절차가 복잡하거나 과도한 제출 서류는 없는지? 혹은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적은 없는지?
- 향후 다른 업무에 대한 불이익 우려를 주거나 이의제기 창구가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2. 시민 만족 사례

“어제 제 민원으로 인해 전화를 드렸었는데 비록 제가 광주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화 통화만으로도 본인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노력이 더해져서 그런지 오늘 제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마움을 전해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시민 A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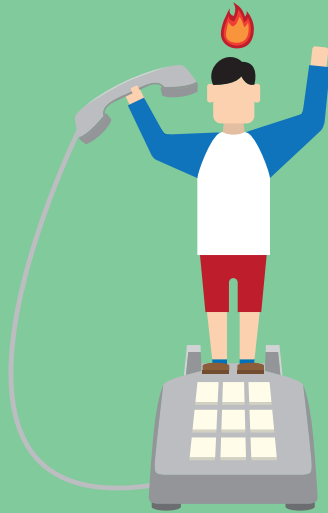
위의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칭찬사례다. 이 글을 작성한 시민 A씨는 전화 통화만으로도 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12

시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다

가로막혀 통하지 못하면 민정(民情)이 그 때문에 답답하게 되는 것이니,
와서 호소하고 싶은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오는 것처럼 해주어야만 훌륭한 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



불만 민원을 처리할 때

벌써 1시간째다. 분명히 규정상 안되는 민원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왜 안되느냐고 소리치는 시민 앞에서 나는 죄인처럼 서 있다. 절로 한숨이 나온다. 아무리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직업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나 말투와 행동이 거친 시민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불만을 가지고 똑같은 민원을 되풀이 제기하거나 자신의 의견만 옳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여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경청'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만 시민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담당자의 성의있는 태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불만민원 응대의 기본요령

1. 최초의 응대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시민의 불만에 대하여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그리고 정중히 사과한다.
2. 시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 도중에서 말을 가로막는 다든가 방어적으로 변명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며, 시민의 문제와 시민이 걱정하는 점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로 관심을 표시한다.
3.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다.
4. 시민이 화가 나 있는 경우에는 대화 시 가능한 한 톤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감정이 가라앉도록 한다.



5. 끝까지 거절해야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고 우회적인 말을 사용하여 감정의 대립을 완화한다. 즉, “안됩니다.” 대신 “죄송합니다.”로 표현한다.
6. 시민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 책임 주체가 서울시인지, 시민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7. 시민과 말꼬리, 트집을 잡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 언쟁은 자든 이기든 서울시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한다.

어려운 민원일수록 잘 듣는 것이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업무담당자들이 민원인들의 문제해결에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잘 경청하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불만민원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속마음까지 이해하려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지켜야 할 것은 내 가족만이 아니다

강과 하천의 유역에 해마다 홍수가 나 백성의 큰 근심거리이면
제방을 쌓아 백성의 거처를 안정시켜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재해·재난 시 비상근무를 할 때

며칠째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역에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전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명령이 내려졌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구 ○○동. 현장에 도착하니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복구작업에 한창이다.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2011년 7월 27일, 서초구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될 일일 것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재해·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돌발사고를 말합니다. 이 모두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와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재해·재난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는 만큼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난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p>1. 재난예방 조치</p>	<p>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2. 재난대응 및 복구</p>	<p>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와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복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p>

재해·재난의 특징은 예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해나 폭설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예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이 시민입니다. 재해와 재난 앞에서도 구분이 없습니다. 내 가족을 포함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더욱 더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워 그 피해를 막고 처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清
廉

3장 | 청렴, 올바른 가치관으로 완성된다

14

세상은 좁고 직무관련자는 많다

예의 있는 교제는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아야 치욕을 피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직무관련자를 만날 때

친구들이 찾아와 내가 잘 가는 홍어집을 찾았다. 단골이다 보니 주인이 나를 반긴다. 친절하게도 부위별로 양도 듬뿍, 게다가 모 지방 특산품이라는 막걸리까지 맛보라며 서비스로 준다. 그런데 내가 곧 관내 업소 위생점검에 나가게 될 텐데 이 식당 주인을 직무관련자로 봐야 할까? 싱글벙글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깨가 으쓱하지만, 좀 꺼림칙한데…….

앞의 사례처럼 위생점검이나 단속 계획이 있는 경우 음식점 주인은 직무관련자가 될까요? 점검이나 단속 계획이 있으면 직무관련자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렇듯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직무관련자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처신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란 간단히 정의해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 처리에 관련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관련자는 담당 업무마다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관내 음식점의 위생점검, 소방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음식점 주인과 소방시설 관리자 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행동강령상으로 정한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2.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이나 단체
3.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4.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5.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이나 단체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9. 서울시의 경우,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료 직원, 민원으로 찾아온 시민,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아주머니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적인 관계에 있다가도 직무관련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행동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1.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만으로 징계처분

다음은 형법상으로는 용인되더라도 공무원이기에 더 엄격한 잣대 아래 징계를 받은 사례다.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고위 공무원 형법상 무죄 선고,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웃

○○부 산하기관 A씨는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종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가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부 중앙징계위원회는 최종 무죄 판결에 따라 해임처분은 취소했지만 뇌물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자와의 돈 거래 등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리고, ○○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A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려져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었다.

임용심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 의무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을 금지하고 만약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규정한 ○○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12. 1. 15.)

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를 대할 때 금해야 할 행동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이해관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해 생각하듯이 직무관련자와 관계한 행동도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한해야 한다.

첫째

본인이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골프접대 등을 받아서는 안되고, 나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도 위의 금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둘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셋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되고, 직무관련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아서는 안된다.

15

달콤한 부패 바이러스, 당신도 예외 없다

무릇 수령은 자기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을 관아에 끌어들여
만나서는 안 된다. 관부(官府) 안은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금전 유혹을 받을 때

외출했다가 사무실에 돌아오니, 누군가 찾아와서 기다리다 갔다고 한다. '누굴까?' 하고 궁금히 여기다 책상 서랍을 열어 보니 흰 봉투와 함께 명함이 한 장 놓여 있다. 사촌이 소개해 준 다던 입찰에 참여할 지인이다. 봉투를 보니 상품권이다. 곧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상품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부패 바이러스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에 파고듭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새 감염되고 맙니다. 노골적인 금품수수가 아니라 정당한 금전의 차용이라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 차용 과정에서 현저히 낮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직무관련자가 돈을 빌려주고서 나중에 상환받지 않는 경우도 뇌물수수가 됩니다.

처음부터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패와 멀어지기 위해서는 부패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누구나 부패의 유혹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부패한 공직자가 되고, 다른 누군가는 청렴한 공직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평소 생활 속에서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껏 청렴했다고 하더라도 유혹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맨 처음 작은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나 스스로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나의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선물이 어떻게 부패로 발전하는가?

1단계 소박한 선물 제공부터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돈을 주는 순진한 업자는 없다. 처음에는 정말 소박한 선물 (자기가 산 것이 아닌 기념품)을 제공하고 다음은 고깃집 또는 일식집에서 식사와 술, 택시비 정도 제공한다. 그리고 명절에 인사를 가거나 유흥주점 같은 곳을 함께 출입하기도 한다.
2단계 대가성 금품 제공	1단계를 지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데 죄의식이 적은 10만 원, 50만 원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결국 10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3단계 청탁을 거절 못하는 단계에 이름	처음에는 업자를 경계하던 공무원도 사적인 친분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동지의식을 느끼고 인정에 따라 거절 못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상대방은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뇌물수수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에게 접근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마라. 그러나 내 돈은 받아도 된다.” 그리고 계속 돈을 건넨 후 나중에 결정적인 부탁을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무심코 받아들이는 호의가 공직자의 청결한 의복을 새까맣게 물들입니다.

부패와 멀어지는 9가지 습관

1. 부패는 남의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처음부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동료 공무원이 하는 일을 묵인하다가 다음은 뇌물의 일부를 나눠 갖고, 그러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부패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2. 과도한 부채를 지지 마라.

평소에 규모 있고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아 많은 빚에 허덕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뇌물의 유혹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3. 절대 보증 서주지 마라.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4. 불륜관계를 만들지 마라.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은밀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5. 도박을 철저히 멀리하라.

도박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한 공무원이 적발되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있다.

6.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삼가라.

주식 실패로 빚을 지면 뇌물에 손을 댈 수도 있다.

7. 지나친 음주가무를 삼가라.

술은 공직자가 거리를 두어야 할 금기사항 중 하나다. 부패는 상당수 직무 관련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8. 이권 청탁은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라.

뭐든지 맨 처음이 어렵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부패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의 경지에 다다른다. 즉, 부패의 습관에 빠지는 것이다.

9.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가져라.

항상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되새기며, '나는 공무원이다'라는 자세로 '내가 어떻게 그런 부패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16

받아도 되는 건지 헛갈릴 때는 받지 마라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금품이나 접대의 기준이 모호할 때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있다. 내게 형님, 형님 하면서 늘 깍듯이 대하고 저녁값, 술값을 도맡아 내는 친구다. 그 친구 사업에 내가 업무상 직접 관련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학교, 사회 선배로 존경한다 싶어 나도 가까이 지냈다. 그런데 나의 담당 업무가 바뀌면서 그 후배가 하는 일이 관련되게 됐는데……. 직무관련자가 된 절친 후배, 지금껏 그래왔듯 지내도 될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 금품제공이란 없습니다. 골프 접대를 하거나 뇌물을 주는 것은 남과 다른 편의나 특혜를 누리기 위 해서입니다. 그러나 “뇌물수수는 주는 사람이 알고, 받는 사람이 알고 있으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하듯이 결국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접대하거나 뇌물을 준 업자는 그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공사대금을 횡령하여 부실공사를 하거나 하청 업체에 연쇄적으로 부정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자가 부실공사나 하청업체의 진정으로 구속되면 자신이 접대하거나 뇌물을 준 공무원 리스트를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단 한 번의 금품수수만으로도 영원히 공직에서 퇴출하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또, 금품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형법상 수뢰죄로 형사고발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6가지

1. 채무의 이행으로 정당하게 받는 금품
2. 직무수행 중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무원을 위한 공개 구호 금품
4.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5.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는 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도 금품을 받아서
는 안되며, 과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였던 자로부
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무원은 무언가 찝찝한 생각이 들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 모
른다.'고 단정해서도 안됩니다.

1. 뇌물수수의 경제학

부패경제학에서는 뇌물수수의 기대이익(뇌물수령액)이 기대비용(뇌물수수가 발각될 때 받게 될 처벌)보다 높은 경우 뇌물수수가 일어날 확률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뇌물수령액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기대비용을 추월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뇌물로 1억 원을 받았을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①직업 상실, ②퇴직금 손실, ③징계부가금으로 인한 손실, ④형사고발로 인한 비용, ⑤평생 따라다니는 뇌물수수 공무원이라는 낙인 등을 고려한다면 뇌물수수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 6급(21년차, 50세)의 경우 파면 시 연봉과 퇴직금 손실액만 약 5억 9600만 원 발생

2. 금품수수 실제 적발 사례

사례1 - 택배로 배달된 명절선물 수수 적발

공직 유관단체 A팀장이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 세트를 명절선물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고 말했다. A팀장은 다음날 돌려주려 하였으나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것이 적발되어 금품수수로 처리되었다.

사례2 - 직원체육대회 경품협찬 요구 적발

광역자치단체 총무과장과 담당직원은 자신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경품이 필요하자, 금고계약을 맺고 있거나 각종 기금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관내 금융기관에 협찬을 요구, 이들로부터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협찬받아 직원들의 체육행사에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다가 적발됐다.

사례3 - 직무관련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적발

공사 직원 A씨는 아파트 시공업체 이사 및 현장소장 등과 함께 골프라운딩 후 저녁 식사 접대를 받고, 골프비용, 메론 상자 4 상자, 저녁식대 등 총 120여만 원을 아파트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카드로 계산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17

편하면 선물, 불편하면 뇌물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욕심이 크므로 청렴(淸廉)한 관리가 되고,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욕심이 작으므로 탐욕(貪慾)한 관리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생각이 여기에 미친다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옹 선생〉



대처할 거를도 없이 금품을 받았을 때

이번 명절에는 뭐가 들어 오려나? 아내가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내 방침은 확고하다. 우리 집에 너물은 절대 들일 수 없다. 식구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런데 식구들이 모두 나간 사이 경비 아저씨가 택배로 온 물건을 받아 두었다고 가져가란다. 모 업체 임원이 보낸 조기 한 상자인데, 놓고 간 걸 되돌리자니 그동안에 상할 것 같고 성가시다. 마침 처가에 가려 하니 선물로 가져가면 딱 좋을 듯한데…….

뉴스 보도에 종종 “뇌물인 줄 모르고 받아서 내버려두었다가 뒤늦게 알고 되돌려 주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유력 인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국민의 의혹은 가시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받은 선물이나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누가 보낸 것인지 알면 상대방에게 통화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이런 선물(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으니, 반환하겠다.”고 알립니다.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서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클린신고센터는 감사관 내 조사담당관 사무실에 있으며, 행정포털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물품이 배달되었을 때

첫째, 무의식적으로, 관례로 또는 궁급증, 호기심으로 개봉하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무슨 물건인지, 어떤 의도인지 확인한다.

셋째, 나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 또는 어떤 의도가 있는 물품일 경우, 즉시 반송한다.

넷째,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모르는 물건은 반드시 나에게 확인한 후 받도록 주의를 준다.

다섯째, 즉시 반송을 안 할 경우, 시기를 놓쳐 반송하지 못해 상대방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한다. (받은 물품을 미개봉 상태로 보관한 경우도 뇌물수수죄로 간주할 수 있음)

여섯째, 의례성이라도 한 번 받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용해 다른 의도로 접근할 수 있음을 주의한다.

뇌물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뇌물이 집에 배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이 애매한 때도 있습니다. 흔히 금품을 받고서 잠자리가 편하면 선물, 불편하면 뇌물이라고 합니다. 받은 사실이 동료나 일반인에게 알려져도 떳떳한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떳떳한 공무원이라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받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금품수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 7가지

1. 금품을 수수한 후 반환하면 괜찮겠지? No!

취득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된다.

2. 금품을 요구하기만 하고 실제로 받지는 않았는데 괜찮겠지? No!

금품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했다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제안만으로 처벌 대상이다.

3. 금품을 공개적으로 받아서 나눠 가지면 괜찮겠지? No!

금품은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금품을 받아서 나눠 가지면 나눈 액수를 수뢰액으로 봐서 전액 뇌물수수로 본다.

4. 직무와 무관하게 받은 돈은 괜찮겠지? No!

직무상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징계사유다.

5. 부서 차원에서 물품(등산화 등)을 협찬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괜찮겠지? No!

공무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또는 시

금고)로부터 다량의 협찬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6.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을 맞아 지방의회의원에게 3만 원 이상 선물하는 것은 괜찮겠지? No!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과 관련해 직무 관련 공무원이므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3만 원 한도의 소액 선물만 허용된다.

7.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3만 원 이상 화환을 선물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반송했으니 괜찮겠지?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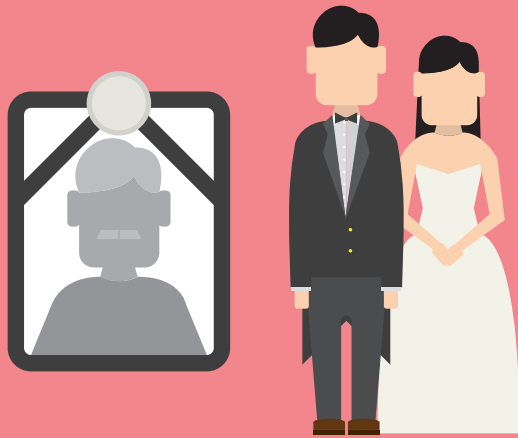
화환을 보낸 행위만으로 행동강령 위반이며, 상대방이 금품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기쁜 일·슬픈 일, 진심 하나면 된다

좌수와 아전, 군교가 상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했을 때는 부의를 보내고
조문하여 은정(恩情)을 보여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경조사가 생겼을 때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다. 철없게만 보이던 녀석이 장가를 간다니 기특하기도 하다. 내게는 개혼이니 보는 눈들도 있고 성대하게 치러야 할 텐데. 나도 이 사람 저 사람 경조사에 빠짐없이 다니는 편이니 이참에 뿌린 돈을 거둬야지. 이런 경사에 누군 부르고 누군 안 부를 수 있나? 내가 명함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해야겠군.

경조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우리의 경조사 문화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이어진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조사가 뇌물수수자에게는 합법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이런 이유로 경조사를 알리는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애매한 경조사 범위, 명쾌한 가이드

경조사의 범위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경조금품 범위	5만 원 이하로 주고받아야 함. 공무원의 친족,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나 친목단체의 정관, 회칙이 정하는 경조금품,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금품에 대해서만 5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음



경조사 알릴 범위	친족·내부직원·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 대해서만 통지가 가능 즉, 친족에 대한 통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 망 등을 통한 통지,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본인이 소속된 종교 단체나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
경조사 알릴 금지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알릴 금지, 더구나 5만 원 이상 수수 금지

소득이 높은 국가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경조사의 경조금 한도는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보통 25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10달러에서 50달러 정도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5만 원이라는 경조금품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진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1. 경조사 발생 시 행동 지침

Q. 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직무관련자가 100만 원의 경조금을 내고 간 경우, 어떻게 하나?

경조금은 접수하되,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직접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Q. 신문·방송을 통해 경조사를 공지했는데 직무관련자가 이를 보고 온 경우, 어떻게 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방송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본다.

Q.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장 등 관내 타 기관장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나?

타 기관장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Q.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나?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기관 내부통신망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인 누구나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에는 경조사를 게시할 수 없다.

2.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 사례

사례1 - 장인상을 해당 직무 관련 협회에 알림

○○구청 A과장이 장인상을 당하자 ○○과 직원들은 국장 명의로 A과장의 경조 사실을 직무 관련 단체인 ○○협회에 FAX로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공지하였고, 그 결과 A과장은 20만 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총 420만 원을 경조금으로 받았다.

사례2 - 본인 결혼식 청첩장에 명함을 넣어 직무관련자에게 알림

○○구청의 구청장 A비서관은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협의회, ○○의회, 복지관, ○○협회, ○○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고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다수 받았다.

사례3 - 자녀의 결혼식을 업체 대표들에게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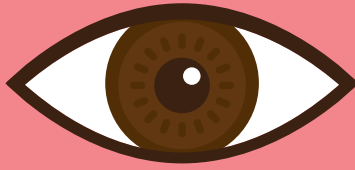
A기관장은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결혼식 청첩장을 위 대표들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그 경조사를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청사현관 출입구 유리창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도 상당기간 게시하여 모두 30여 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50만 원씩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다.

19

동료는 나의 거울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났거든 여러 창고의 절목(節目)들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물어 그 이름고 해로움을 알아내어, 그 중에서 사리(事理)에 맞는 것은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조직·동료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옆 부서의 동료가 밤늦게 협력사 직원과 비싼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어쩐지 꺼림칙하다.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고 내가 곤란해지는 건 아닌지…….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전화(02-6360-4800)나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포털 등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하면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각 기관 주무부서장)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홈페이지)와 함께 청렴비리신고센터(행정포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비리 신고센터에는 시민과 공무원이 금품·향응 요구, 업무처리 고의 지연·부당반려,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 공직자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청렴비리신고센터는 서울시 공직자를 위한 내부비리신고센터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금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클린신고센터(행정포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모두 이 정도는 한다.” ‘동기가 순수하면 괜찮다.’ 고 하여 조직이나 동료의 부정한 모습을 묵인하게 되면 결국 자신도 오염되고 맙니다. 용기 있는 제보가 조직과 동료, 나 자신을 보호합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부신고시스템인 ‘감사관 Hot-Li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간 전문기관이 운영하여 서울시 공무원이 내부 비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시 내부신고시스템 ‘감사관 Hot-Line’

이 시스템은 신고자의 IP주소가 공개되지 않고 신고 내용만 감사관실로 전달되는 보안체 계로 구성돼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운영업체인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은 비리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관실 담당자 휴대전화로 비리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을 문자로 알리고, 이메일로 신고 내용을 발송한다.

폭풍우에 끄덕 않던 거목이라도 딱정벌레 한 마리가 껌질을 파고 들어가 조금씩 조금씩 파내다 보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의 부정 행위를 스스로 밝히거나 동료의 비리를 신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을 좀먹고 있는 잘 못된 관행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1. 비리 신고에 대한 궁금증

Q.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징계가 감면되나?

신고인을 징계 처분할 때에 이를 정상참작하여 징계를 가볍게 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Q.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Q.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를 안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부정행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 목인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Q.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상자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게 되면 행동강령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2. 공무원의 자정 노력, 클린신고 사례

신고 내용	신고품(현금/물품)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이 과도한 축의금을 준 것을 신혼여행 후 확인하여 반납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거절하여 신고	30만 원
청사 점검 후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컴퓨터 키보드 밑에 흰색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려주려 했으나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	10만 원
철거업자가 공사와 관련한 감사 사례로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식사비를 극구 전달하고 가서 신고	50만 원
일면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반환하려 했으나 연락두절로 반환할 수 없어 신고	100만 원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 제공자를 알 수 없는 화장품 세트가 소파백에 담겨 자신의 책상 밑에 놓여 있어 신고	화장품 세트 (추정금액 : 21만 원)

公

正

4장 | 공정,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20

청렴, 원칙 한 걸음부터

벼슬살이에는 석 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청(淸, 맑음)'이고, 둘째는 '신(愼, 삼가함)'이며,
셋째는 '근(勤, 부지런함)'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원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 본다고 느껴질 때

전에 같이 근무한 부서장의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다들 애도의 뜻과 함께 부의금을 준비한다. 그런데 가만 들여보니, 다른 부서장들은 부의금을 개인 돈이 아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내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개인 돈으로 부의금을 내는 나만 바보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원칙을 지킨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원칙을 지키는 나만 융통성 없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



뺨과 타조는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머리만 숨겨도 자신의 전체를 감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몸통을 그대로 놔두고 머리만 모래 틈이나 수풀 속에 넣으면 자신을 아무도 볼 수 없어서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습성입니다.

사람도 이처럼 주관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의 합리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관행과 같은 집단적 행태일 때 더욱 심해집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이 어리석은 뺨과 타조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시민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공무원 사회라는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해 봅시다.

공직사회의 몇가지 잘못된 관행 예시

1. 출장을 실제로 나가지 않았으면서 출장여비를 허위로 수령하는 사례
2. 업무와 관련없이 시간을 보내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사례
3.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사례
4. 업무추진비를 부서장 개인용으로 쓰는 사례
5. 연말이면 남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하는 사례 등



- ① 나는 정직한가? 오늘 밤 편안히 잘 수 있을까?
- ② 이것이 올바른가? 내가 믿는 친구가 옳다고 인정하겠는가?
- ③ 그 일을 내 자식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 ④ 그 일이 내일 아침 신문에 실려도 떳떳할 수 있을까?
- ⑤ 내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과연 옳은 것으로 여겨질 것인가?

만일 이 중에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있다면, 나는 공무원으로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렴 길도 한 걸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 청렴 길로 함께 이끌어야 합니다.

21

청탁 거절의 법칙

청렴(淸廉)한 자는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적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병통(病痛)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責望)하는 데 무겁게 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 가볍게 하는 것이 옳다. 청탁(淸託)이 없으면 청렴하다 말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청탁을 받았을 때

이번 공사 입찰에 인테리어업을 하는 선배가 참여한
다고 부탁을 해 왔다. 평소 내가 신세를 많이 져서 어
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을까 고민이 된다. 선배 회사가
이 분야 공사 실적이 꽤 되는 듯 하니, 입찰 참가 자격
을 유사한 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회사로 한정하고 점
수도 후하게 주어야겠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해관계에 얽혀 부당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 했습니다. 백성이 가난한 것은 참아도 공평하지 못한 것은 못 참는다는 뜻입니다.

특혜를 베푼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과거에 도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 자신이 특정 공무원의 특혜로 불이익을 받는 처지가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패는 많은 부분 알선, 청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가로 뇌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알선이나 청탁이 우리 주변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어 누군가를 잘 좀 부탁한다거나 식사 자리에 아는 지인을 동석시켜 인사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탁을 당할 때 청결하게 씻어내는 예방법

- 자존심을 버린다! 청탁자가 목적을 위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과감히 물리친다.
- 인생관을 보인다! 어떤 유혹이 와도 변하지 않을 나의 평소 소신을 보인다.
- 그릇된 가정에 반박한다! 부도덕한 일을 일반화해 말하는 핏에 넘어가지 않는다.
- 비난을 일축한다! 청탁자가 뜻대로 안 되어 비난하더라도 무시한다.

공무원이 공정성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는 서양보다 더욱 인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행정은 시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들의 편파판정에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선수나 한 팀에 대한 특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쉽 없이 훈련한 다른 선수와 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공정한가를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 친구, 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 대응 요령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청탁은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청탁 상황에 대응하는 요령을 알아보자.

[방법 1] 문제 청취의 회피 등 청탁 기회의 사전 제거

청탁자가 청탁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접촉이나 발언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다.

-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급한 일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얼마 전에 사무실 동료가 비슷한 부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감사실의 엄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 “요즘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만나시죠.”

[방법 2] 청탁 사실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

청탁을 수용하기 위한 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를 청탁을 거절한다.

- “후배님! 내가 처리하는 업무는 특성상 직근 상급자 및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청탁 내용대로 내가 혼자 조용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게.”

[방법 3] 청탁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서 청탁을 거절 권한이 없어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탁자의 청탁을 거절한다.

- “선배님! 저는 인사업무 실무자입니다. 계약직 채용 관련 건은 실무자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검토, 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재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방법 4] 청탁 수용 시 수탁자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음을 들어서 철회 유도

청탁을 수용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청탁자로 하여금 청탁을 철회하도록 한다.

- “작년에 우리 기관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발각되어 청탁을 한 직원과 청탁을 받은 직원이 전보 및 승진인사에서 큰 손해를 보았어요. 요즘 공직 사회에서 청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끼리끼리 특혜, 예외 없이 족쇄가 된다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들 단단히 단속하여,
남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가족·지인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청탁할 때

작은아버지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정년 퇴직 후 작은 인쇄소를 개업하셨는데 요즘 일감이 없어서 힘이 든다고 하신다. 우리 부서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을 맡겨주면 가격도 비싸지 않게 잘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렴한 가격으로 인쇄하면 세금도 아끼고 품질도 믿고 맡길 수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모든 일이 잘되고 있다’는 뜻으로 ‘Bob’s your unc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는 능력이 검증 안 된 조카를 고위직에 임명했던 로버트 세실 영국 총리의 별명 Bob을 써서 만든 냉소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른바 배경을 이용해 편의를 보려는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친구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 일까요? 주변에서 이런 일을 접할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민 대다수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시민뿐만 아니라 정직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럼에도 공직 사회에는 친인척비리가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혜란 법령의 근거 없이 타 집단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실제로 적발된 사례

- ○○구청이 구청 간부, 직능단체장, 구의원 등의 친인척을 기능직으로 채용
- ○○구청 산하 공단에서 기습 공고, 백지 채점표, 들러리 세우기 등 부정을 통해 구청 간부 친인척을 채용
- ○○투자출연기관은 임원의 딸이 설립한 회사와 수익계약을 맺어 사무용품을 공급받음
- ○○투자출연기관은 대표의 친구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공사를 맡김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각종 특혜를 주거나 부당하게 채용하는 행동은 조직에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친인척에게 준 혜택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에 꽂힙니다. 연줄이 판치는 불공정한 사회에는 시민의 분노가 뒤따릅니다. 한순간의 이득이 결국 자신뿐 아니라 친인척까지도 파멸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혈연·지연이 결국 악연이 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가족, 지인에게 특혜 주고 적발된 사례

사례 1 - 공사건을 지인에게 낙찰

○재단 A간부가 애초 공사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B씨에게 일감을 준 것이 적발되었다.

사례 2 - 가족 부당 취업, 불법 압력 행사

○구청 A팀장은 ○구 소재 B건설사에 자신의 처를 이사로 취업시키고 직위를 이용해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B건설사가 진행하도록 다른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적발되었다.

사례 3 -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병원 A씨는 금연 관련 소핑몰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 B씨와 함께 ○구 등 5개 자치구 업무담당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 이권을 청탁하였다. 또 본인이 ○구에서 금연사업 업무를 맡아 남편의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었다.

사례 4 - 안내문에 특정인을 명시

○기관 직원 A씨는 공사 때문에 관광지 내 업소가 영업을 못하게 되자 업소 주인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할 것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안내문에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인 특정 세무사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명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사례 5 - 지인의 자녀, 부당취업

○○기관 A국장은 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알고 자신이 전 근무지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자녀 B씨에게 모집공고 전 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알려 주었다. 서류심사 결과 B씨가 10배수 내에는 들었으나 순위가 3위에 불과하자 면접시험에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한 C국장 등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도 B씨에게 후한 점수를 쥐 합격시켰다. 동시에 경쟁자들에게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주어 고의로 탈락시켰다가 적발되었다.

23

내부 정보 활용은 명백한 범죄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변경하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버리지 않도록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테크를 할 때

직무관련자가 제출한 민원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비닐하우스를 구입하면 개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직무관련자는 내게 딸 명의로 비닐하우스를 사 두었다가 상가 입주권을 얻으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귀띔해줬다. 이것 참 좋은 기회 아닌가?

공무원도 시민과 마찬가지로 결혼, 자녀교육,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 재테크에 관심이 클 것입니다. 그래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단 개인이 주식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정작 큰 문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몰입하다 보니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편법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모 부처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에 시민은 분노하고 거세게 비난합니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적발된 사례

- 건설 관련 공직자가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해 그 땅을 싼 값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음
- 기피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에 인근 주택을 구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음
- 학교 이전을 위해 입지를 선정하는 중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것임을 알고, 친척에게 주변 토지를 구매했다가 매각하도록 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김
- 코스닥 미등록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다량의 주식을 취득한 후 거액의 차익을 남김
- 담당 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 줌
- 동주민센터 직원이 심부름센터와 결탁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음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돈별이가 될 만한 정보를 접하면 누구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룰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스포츠에서 심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일 심판이 직접 게임에 참가하여 선수로 뛰겠다고 하면 그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4

굴복하면 더 큰 낭패가 뒤따른다

이익(利益)에 유혹되어서도 안 되고, 위세(威勢)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道理)이다.

비록 뒷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새로운 상가 개발지역의 이주민 보상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상급자가 나를 부르더니 그 지역의 모 업체에 유리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한다. 그 업체의 사장이 상급자와 동창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이 업체에만 혜택이 커지면 다른 업체 사람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다. 상급자는 요령껏 만들어 보라는데 이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 눈 속여 가며 해야 하는 일인가?

지난 1999년, 유치원생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참사가 벌어진 건물은 소방시설 부재 등 불법건축 요소가 많아 운영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 담당자가 상급자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 회사의 건축을 허가했다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직급에 억눌려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지시에 따랐다가는 상급자와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례에서도 “만일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만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그런데 직무상 명령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둘째, 직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셋째,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들을 때

- 먼저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나의 인적사항, 지시받은 내용,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이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난 후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다.
-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 이에 대해 보고 받은 소속 기관장은 부당한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당한 지시를 재차 반복하는 상급자는 징계처벌 가능)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따랐다가 큰 참사로 이어진 씨랜드 화재사건. 시간이 지났다고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공무원에게는 상사보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직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상사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떳떳하고 자신감 넘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1.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 실제 판례

- 상급자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다. (대판 91누 3598)
-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도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식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판 66누 68)
- 장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이나 불법일 때에는 이는 이미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대판 99도 636)

2. 상급자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할 때 대응 전략

1단계 : 대응하기 전

- 그 자리에서 부당함을 주장하지 말고 "검토해 보겠다."며 일단 물러난다.

2단계 : 생각해 보기

-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지시받은 사항이 불법·부당한지를 재검토한다.
- 불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또는 공익에 대하여 검토한다.

3단계 : 대응 방법

- 일정한 시간(기간)이 경과된 후 상급자에게 관련 법령에 위배됨을 건의한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부당함을 설명한 후 이행하지 않는다.)
- 부당한 지시가 반복될 경우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즉시 상담한다.

25

두려워야 할 대상은 정치인이 아니다

상관의 명령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民生)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굽히지 말고 곳곳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을 때

내가 사는 지역 A정치인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청탁받은 일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의 선거운동에 큰 힘이 되어 준 B씨의 친척을 산하기관 경비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것이다. 경비직도 공개채용을 통해 뽑기 때문에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이 정치인과 섭섭지 않게 지내는 것이 내 신상에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해야 하나?

홍주 목사로 있던 유의에게 정약용이 공무를 의논하기 위해서 편지를 올렸으나 답이 오지 않자, 왜 답신을 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의는 “조정의 고관대작들이 보낸 편지를 포함하여 사적으로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단 한 통도 개봉하지 않았다.”면서 “공문으로 보내면 될 것을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정약용의 편지 역시 열어 보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정약용은 “그건 참으로 그럴 만하다.”하고 이 일에 감복하여 훗날 목민심서에 이 일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은 권력 앞에서도 고집스러운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에 대해 마음대로 이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신고, 상담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각 기관 주무부서장)과 상담,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실제 적발 사례

- A국장이 정계 유력인사 B씨로부터 친척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만일 채용하지 않으면 예산심의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압력을 받은 A국장은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사계장과 협의, 면접관들에게 사전에 부탁하여 B씨의 친척이 합격하도록 도와주었다.
- ○○시 A과장이 관내 유력인사 B씨로부터 사업소가 보관 중인 보도블록 100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부당한 반출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보고나 상의 없이 무단 방출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정치인 등의 범위는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및 정치 사조직 등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적으로 덕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儉約

5장 | 검약, 시민의 세금을 귀히 쓰다

26

세금은 시민의 재산

수령(首領)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慈愛)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清廉)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儉約)해야 한다.
씀씀이를 절약(節約)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시 행사에 필요한 티셔츠를 구매하게 됐다. 예산은 예년에 썼던 금액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옷 공장을 운영하는 후배가 찾아와 단가를 개당 500원씩 낮추어 주겠다고 한다. 매년 시가에 맞추어 쓰던 예산인데 내가 아는 후배 덕에 절감하게 되면 내가 뭔가 덕 좀 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산대로 집행해 주고 그 차액을 슬쩍 받을까?

세금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므로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만큼 모든 예산은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에 한 치의 낭비도 없이 알뜰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복지예산 횡령, 부당한 설계변경, 물품의 고가매입, 과도한 행사비 집행, 특정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 기타 공금을 빼돌리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공익이 아닌 공직자 개인이나 제3자의 배를 채우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이 낭비된 사례를 볼까요?

2009년에 구청 사회복지과에 재직하던 공무원이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72회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받은 복지기금 가운데 정예수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26억 4400만 원을 매월 700만 원 ~ 9000만 원씩 가족명의 개인통장으로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공무원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했으며 횡령한 돈으로 외제차와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공금횡령은 각종 수수료, 보조금, 일상경비 등 현금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납품자와 결탁하여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처리하거나 수량을 실제보다 많이 검수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계좌를 속여 자기 또는 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대금을 그대로 돌려 받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수법이 쓰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세금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금에 낭비와 부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 횡령 관련 언론보도 사례

액수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공금횡령은 패가망신과 시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

사례1 - 간 큰 구청공무원 공금 2억 횡령

A씨는 1년여 동안 일상 경비를 집행하면서 가짜 전표를 만들어 법인카드 계좌에서 58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200여만 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관내 7개 업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면서 허위 결재를 받아 자기 아들 명의 통장에 14차례에 걸쳐 모두 2900여만 원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사례2 - 브로커와 결탁해 공사비 일부 횡령

○○구청 A씨는 공사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속여 500만 원 규모의 복지관 공사비를 190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차액 중 일부를 브로커에게 송금받는 수법으로 공사비 일부를 횡령했다.

사례3 - 입찰 특혜 대가로 2억원 수수

○○구청 A씨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음향조명공사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다.

사례4 - 공무원 기금통장에서 7억 7000만원 횡령

○○구청 A팀장은 직원들이 관리하던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7억 7000만 원을 빼돌린 뒤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적발되었다.

사례5 - 선거비용 일부 횡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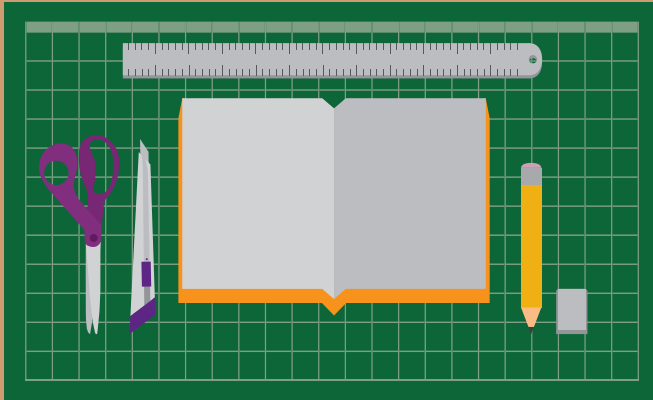
○○구청 A씨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안내문 발송선거 종사원 수를 부풀리거나 작업 일수 등을 허위로 꾸며 선거사업비 488만 원을 횡령했다.

27

당신도 모르는 사이, 세금 절도범이 된다

개인적인 것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나,
공적인 창고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公物) 보기를 사물(私物)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사무용품 사용할 때

“아빠, 시험공부에 쓸 참고자료, 파일에 담아 메일로 보냈는데 프린트 좀 해다 줘요!” 사랑하는 예쁜 딸의 긴급 요청이다. 파일을 열어 보니, 양이 꽤 된다. 기특한 녀석, 이번엔 성적을 바짝 올리겠다더니. 근데 죽히책 한 권은 되는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프린트하나? 그래! 점심시간에 하면 되겠군. 영특한 내 자식을 위한 일이 곧 나라를 위한 일이야.



앞서 공직자의 이런 행동은 절도나 다름없습니다. 공용물은 시 예산으로 구매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시청 건물부터 사무용품, 인터넷 사용료는 물론 출장 시 적립되는 항공 마일리지, 물품 구매 포인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물건은 소중히 여기면서 유독 공용물을 쓸 때는 한없이 너그러워집니다. 함께 쓰는 물건엔 주인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직자가 사용하는 책상 위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입니다. ‘당장 필요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어차피 세금으로 산 것인데.’라는 습관이 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세금 절도범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공직자라면 아래 질문에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싼 외제 필기구 등 사무용품을 공금으로 구매하여 자녀에게 갖다 준 적이 있나요?
- 업무와 관련 없는 인쇄물을 출력한 적이 있나요?
- 공무원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한 적 있나요?
- 개인 차량의 연료를 예산으로 사 넣은 적이 있나요?
- 업무 택시를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나요?
- 공용물 구매로 쌓인 마일리지를 이용해 개인 용품을 산 적이 있나요?



공용물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닙니다. 또 마일리지는 거저 생긴 눈먼 돈이 아닙니다. 공용물을 사용할 때 이 물건의 주인인 시민을 한 번 더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물건을 대신 사용하고 있는 동안 늘 내 것처럼 절약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목민심서에도 “절약은 청렴의 근본이요, 목민관의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기본 상식입니다.

28

업무추진비는 개인 급여가 아니다

교묘하게 명목(名目)을 세워 수령(首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없어야 한다. 여러 조목(條目) 중에서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것은 다 삭제해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해줘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곧 있으면 동문회가 찾아온다. 공무원이라고 친구들에게 매번 얻어먹을 수만은 없다. 이런저런 모임 다 나가다 보니 지출이 이만저만 아닌 걸? 직무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조항이 있지 않나? 그럼, 이리저리 꼬인 일 풀어 줄 친구들이 있는 동문회도 유관기관이니 상생하는 모임으로 만들어도 되겠지?

업무추진비의 오용은 공무원 사회의 '새는 바가지'의 가장 큰 구명입니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간부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책추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즉, 직무 수행과 사업 수행의 유회유로 쓰는 돈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있고 그 각각의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잘못 사용되어 시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기도 합니다. 예컨대, 단순히 내부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 직원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직원 간담회를 실제로 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카드를 '내가 쓴다!'하는 기분으로 사용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카드가 아닙니다. 개인 지갑에 다른 신용카드와 같은 자리에 꽂혀 있다면 당장 그 위치부터 바꾸십시오. 간혹 가족들을 부서원으로 생각하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가족 외식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생필품을 범

인카드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 본청과 각 사업소의 업무 추진비 집행내용은 매월 1회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내 정보소통광장)

업무추진비의 부정 사용 실제 사례

- 업무 연관이 없는 모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부친상에 조의금 지출
- 병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지인과의 식사비에 부당 집행
- 공휴일 심야에 시외 지역에서 부당 집행
- 업무와 무관한 자의 승진, 영전, 출판기념회 등에 축하 명목으로 부당 집행
- 관계 기관 부서장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구매에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경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얼마나 정당하게 운용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새는 바가지’의 구멍을 찾아 막고 귀중한 시민의 돈을 알뜰하게 그리고 꼭 담겨야 하는 곳에 담아 씹시다.



1. 업무추진비 사용 시 유의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집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사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때 사용한다. 이 때 목적, 일시, 장소, 참석 대상을 명시해야 하고 집행비용은 1인당 4만 원 이내여야 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들을 위한 명절 선물 구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낼 때 사용한다. 축·부의금은 1건당 5만 원을 넘지 못한다. 집행내용이 시책추진 성격인지 기관운영 성격인지를 구분하여야 하고, 행사·회의와 같은 시책사업이 아니면서 단순히 내부직원 격려를 위한 회식비용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한 유형별 사례

1. 시책사업 경비에 집행하여야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인 및 가족과의 식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 ○○기관 대표이사 A씨는 민간기업 사장에게 가방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 개인적인 선물비로 264만원을 사용하고, 민간단체 창립총회에 개인적 후원금으로 466만 원을 집행한 것이 적발되었다.
- ○○시 B과장은 2년 가까이 호텔 및 일반식당에서 가족 및 지인과의 식사비로 556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내가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피자를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112만 원을 각종 간담회 및 협의회



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문책되었다.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시책사업과 구체적인 연관성 없는 직원 회식 등의 식비로 사용한 사례

- ○○시 C과장은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직원 연말회식 비용을 총 7회로 분할하여 170 만 원을 선결제하며, '내년도 업무계획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용도로 사용한 사례

- ○○부서에서 '예산결산심의 자료검토 간담회', '업무 점검을 위한 간담회' 등 명목을 허위로 작성하고 단순 직원격려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품권, 직원격려물품, 생일선물 구입비로 사용하였다.

- ○○부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 결제를 받은 뒤 그 돈을 직원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부서에서는 간담회 명목으로 점심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전문점 등을 이용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청구했다.

- 통상적인 직원격려 시간대로 보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직원격려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4.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대상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잘못 집행한 사례

- ○○부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서물품 구입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방문객 접대물품, 봉사활동

참여직원 관련 비용, 직원격려 관련 물품구입비용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한 유형별 사례

1. 재직 중인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아니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의 관계자에게 경조사비를 집행한 사례

- ○○부서는 직원의 형제나 숙부의 사망, 이미 퇴직한 직원의 자녀 결혼, 업무무관성이 명확하지 않는 기관 직원의 자녀 결혼, 모친 사망, 부모 회갑연, 돌잔치, 직원 가족의 병문안 등 명목으로 경조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2. 2~3개월분 경조사비를 일괄 품의하여 한 번에 집행한 사례

- ○○부서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급하면서 경조사마다 품의를 받아 집행하지 않고, 2~3개월분의 경조사비를 한꺼번에 품의 받아 집행하는 등 현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

아래와 같은 업종에서는 절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낵칵테일,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3. 축의·부의금 지급 관련 달라진 사항

- 축의·부의금은 같은 관서(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내 같은 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 관서 내 부서를 달리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예: 본청 예산과 ↔ 본청 회계부서 불가

- 다른 자치단체(광역·기초)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축의·부의금 집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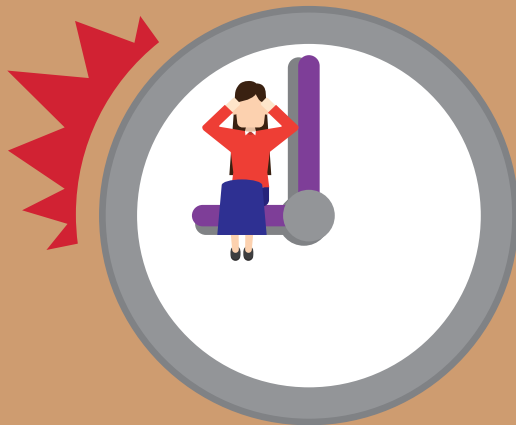
예: 본청 세무과 ↔ 자치구 세무과 가능

29

공직자의 초과근무 채우기 캠페인?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이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초과근무를 할 때

초과근무수당? 그거 공인된 내 용돈 아닌가? 내게는 동료와의 술 자리도, 컨디션 유지를 위한 체력단련도, 감성 순화를 위한 영화감상도 다 업무의 연장이다. 초과근무수당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주말에 등산 갔다 오면서도 초과근무를 찍었다는데 나만 정직해 봐야 손해일 뿐이다. 챙길 건 챙기고 업무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면 될 것 아닌가?

앞 상황과 같이 업무와 관련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고도 뚝뚝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과근무수당이란 말 그대로 업무시간에 업무를 마무리 못했을 경우나, 긴급한 상황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를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으로 여겨 어떤 방법을 써서든 월 한도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당한 초과근무 적발 사례

- 휴일 여가활동을 마친 뒤 등산복 차림으로 청사에 되돌아와 초과근무 체크
- 휴일 봉사활동을 해놓고 초과근무한 것처럼 하여 수당을 챙김
- 퇴근 후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와 초과근무 체크
- 퇴근해서 집에 있다가 늦은 시간 다시 돌아와 초과근무 체크
-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개인적으로 헬스클럽이나 학원을 이용하고 초과근무 체크
- 불필요하게 습관적으로 사무실에 대기하였다가 초과근무 체크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초과근무를 대신 체크하게 하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돈입니다. 공직자의 모든 수당 역시 내 귀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시민이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 있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성에 길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그리고 부당하게 타내는 초과근무수당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1. 초과근무의 세 가지 유형

다음 중 나의 초과근무는 몇 번째 유형일까?

유형	원인	치방
업무과다형	실제로 업무량이 많은 경우	직무 분석이 잘되지 않아 한 사람에게 업무가 폭주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직무 분석 필요
퇴근 직전 눈치형	일도 없는데 윗사람 눈치 보고 앉아 있는 경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나 하루 빨리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함
시간초과 무능력형	업무자 자신이 무능하여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무 시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묻고 배우고 연구, 업무 습관을 개선해야 함

2. 사례별 시간 외 근무 인정 여부

초과근무가 언제 허용되고 언제 안되는지 사례별로 살펴보자.

교육과건 중 초과근무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과건 기간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다.

휴일의 교육, 행사 시 초과근무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 명령이 불가능하다. (단, 자치단체 주관 축제 등의 행사동원은 가능)

휴가 중의 초과근무

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다.

재택근무자의 초과근무

재택근무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다. (정액분은 지급가능)

업무와 관련 없는 조기 출근, 야근, 휴일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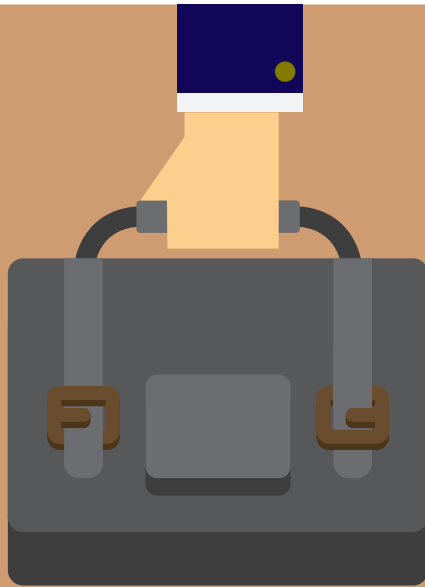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체력단련실 이용, 동호회 활동에 따른 시간도 초과근무가 아니다.

30

출장여비는 당연히 받는 수당이 아니다

공사(公事)에 여가가 있거든 반드시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안정시켜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헤아려내어 지성으로 잘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출장을 갈 때

이번 달 출장여비가 나왔는데 나는 겨우 2만 원이다. 옆 팀의 김 주무관은 실제로 출장나갈 일이 없는데도 10만 원씩 꼬박꼬박 타가던데. 매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인데 제법 짹짹 하겠는 걸. 나도 다음 달부터 실제로 안 나가더라도 유관기관 업무협의 한다는 명목으로 빠뜨리지 말고 출장 품의를 올려볼까?

버젓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하고 출장 여비를 타 내거나, 실제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여비로 수령하는 일이 공식사회에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남이 한다면 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뿌리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출장여비는 실제로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로 출장을 나갈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언론과 시민의 눈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출장 시에도 공무수행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됩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출장여비를 허위로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사례1

**허위 출장여비 신청
적발 사례**

○○시청에서는 2개월간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출장서를 내고 여비 400여만 원을 챙긴 17명에 대해 경찰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구청의 경우 3년간 870회에 거쳐 4739만 원을 허위 수령한 직원 45명이 적발되어 2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사례2 월정액 개념으로 신청한 출장여비 적발 사례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0~30만 원을 월정액으로 수령하거나, 2시간만 다녀와도 되는 출장지를 4시간 이상으로 등록하고, 출장 중 이동 시 관용차량이나 업무택시를 이용했음에도 출장여비를 초과 수령하는 예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	---

이제는 공직사회를 보는 시민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법규에 어긋나면 작은 부정이라도 시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몸은 사무실 어딘가에 있으면서 주머니만 출장을 다녀온 것인가요? 부당하게 받은 출장여비 때문에 자신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무실에 앉아 마음으로만 떠난 출장경비는 신청하지 마십시오.



1. 근무지 내 출장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공무수행 목적 외 허위 출장명령 금지

-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출장 신청 및 허가
- 실제 출장 없이 출장여비 수령을 위한 허위 출장조작 금지
(타 직원이 특정한 사유로 출장 중일 때 중복되는사유의 출장은 금지)
- 출장 허가는 받았는데 출장 사유가 없어지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출장 취소 결재 이행
- 출장 신청과 허가 시 목적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

출장복귀(임무완료) 후 출장 결과보고 철저

- 출장복귀 후 바로 서면(메모보고 등) 결과보고 이행

2. 애매한 상황! 출장 조치가 가능할까?

Q.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 출장이 되나요? NO!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5일 이내의 특별 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출장이 되나요? YES!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Q.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이 되나요? NO!

출장여비를 받지 못합니다.

節 節 制

6 장 | 절제, 자신의 품격을 좌우한다

31

당신은 서울시의 대표선수

확연히 지킬 것을 지켜 흔들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아니하면,
곧 인욕(人慾)이 물러나고 천리(天理)가 흘러 행해질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외부회의·토론·강의에 참석할 때

민간 회사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 벌써 10번째니 이미 나도 스타 강사의 반열에 든 것 같다. 인기가 꽤 많아진 것 같아 기분이 우쭐하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있는 일인데, 상사 입장에서 신고받는 것도 귀찮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지 뭐.

외부에 강의를 나가거나, 외부 회의 석상에서 당신은 서울시의 대표선수가 됩니다. 당신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서울시의 대변인으로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거지는 품위를 잃지 않도록 조신(操身)해야 하고 말하는 내용 또한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내). 강의·토론 등에 초청받는 것은 개인에게나 조직에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지만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다만,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 시정 홍보를 위한 외부 강의·회의 등은 무조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즉,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 총책임관(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 총책임관은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설 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여할 때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 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강의에 대해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칙 허가를 받아야 함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해서 출강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칙 허가를 받아야 함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모든 외부 강의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단, 공직유관단체는 신고대상임

서울시 공무원 개개인이 밖에서는 서울시의 얼굴이 됨을 명심합시다. 당신의 말과 태도가 곧 서울시의 말과 태도입니다.

1. 외부 강의 위반 사례

외부 강의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 다음 위반 사례를 통해 사전에 유의하도록 하자.

- 중앙부처 A본부장은 2005년도부터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회당 60만 원~90만 원까지 모두 510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 받았다. 그런데 A본부장은 60만 원~70만 원까지 1~4회 출강하면서 260만 원 받은 것만 신고하고, 80만 원~90만 원까지 5~7회 출강하여 250만 원 받은 것은 신고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 A위생정책과장은 관내 요식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강의에 매주 출강하면서 1회당 2시간 강의로 회당 15~20만 원 상당의 강사료를 받고도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했다.
-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사무관은 국립대, 교육원 등에 총 24회 출강하여 800만 원의 강사료를 받고도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2월 60만 원, 3월 55만 원, 5월 75만 원 등 회당 50만 원을 초과하는 강사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 중앙부처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 6급)은 직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 처리하고 출강하면서 기업 관련 강의를 한 후 각각 100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

- 중앙부처 감사공무원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피감 요령에 관한 강의요청을 받고 연찬회에 출강하여 감사 사례 및 기법을 각각 1시간씩 강의한 후 강의료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받고 신고하지 않았다.

2. 직무 관련 강의·강연의 대가 기준

강의·강연의 대가는 아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	300	230	120	(단위:천원/1시간)
1시간 초과	300	200	120	10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위 기준은 직무 관련 외부강의 대가 지급 기준이 아니고 이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상한액 개념이다.

32

공무원, 영리 업무를 검할 수 없다

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



————— 다른 분야의 일도 하고 싶을 때 —————

평소 막역한 사이인 후배가 벤처회사를 차리면서 사
외이사 자리를 맡아달라고 한다. 밤낮없이 뛰어 다니
던 후배가 늘 눈에 밝혔는데 따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니 이름만 올려주고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 외에
처리하면 되겠지? 이런 기회에 도와달라는 후배를 쟁
겨주지 않으면 언제 쟁겨주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때 영리 행위는 지속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에 부동산 사무실을 열고 퇴근 후에만 일을 보겠다고 하면 영리 업무가 됩니다. 또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과에 공문 신청)

겸직은 법령상 금지대상이 아닌 업무이면서,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체 등의 임원 겸직은 비영리 법인으로 비상근일 때에만 허가할 수 있고, 현재 또는 직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유발할 우려가 큰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 법인의 당연직 임원 이외의 복수의 임원 겸직은 금지됩니다.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영리 업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의 이사·감사 업무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공무원의 영리 업무나 겸직 허용이 제한되는 것은 본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익을 저해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서울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세심히 살펴 적법한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1.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와 이유

야간 대리운전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서적 출판

서적을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 금지

(저술하여 인세를 받는 경우 허용)

사기업의 사외이사

특정 회사와 특수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자격증의 대여 운영

공무원이 자기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음

(단, 특허권을 보유한 공무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업무 중사가 아니고 사용권의 허용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여 가능)

휴직 기간 중의 영리 행위

휴직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금지

2.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영리 업무의 실제 적발 사례

다음은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되어 있는 영리 업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다.

- ○○과 A씨는 ○○기사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에 대비한 과외활동을 하면서 1인당 15~3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씨는 직접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거래약허가를 받아 적발되었다.
- ○○부서 A씨는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재임하였다. 비록 비상근이사로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되었다.

3. 겸직허가 실제 적발 사례

- 대학교 강의를 위해 사전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부당하게 출강하는 사례
- 당초 겸직허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강의하는 사례
- 외부강의 중 직무와 관련한 비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조기퇴근 및 추가보수를 받는 사례
- 겸직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사례

33

해외출장도 업무의 연장이다

천하의 모든 일이 모두 사람을 얻는 데서 출발하니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 하면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외국출장·외국연수를 갈 때

관광가이드인 나는 공무원 25명과 함께 홍콩 행 비행기를 탔다. 홍콩에 도착한 뒤 저녁식사 후 잠시 쉬고 있는데 호텔 측의 향의가 빗발쳤다. 한국인들이 호텔 방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다른 외국인 손님들이 향의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달려가 “뭐 하시는 겁니까? 한국 망신입니다.”라고 말렸지만 공무원 일행은 “외국이라 그런지 술이 계속 들어가네.”라며 막무가내로 자정까지 술판을 벌였다. 공무원이라 다를 줄 알았더니…….

외국출장이나 외국연수는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물론 외국의 풍물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일부 관광의 형식을 띠 수도 있지만 공적 업무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해외 행정 현장을 두루 살펴 그 경비를 제공해 준 서울 시민에게 더욱 충실한 행정으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외국 출장보고서 또한 일정상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하여 서울시의 자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상 떠난 출장기간 대부분을 관광명소 위주로 여행하거나, 심지어 골프를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처럼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외국에 나갔다는 해방감에 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추태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시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선발을 통해 장기국외훈련 국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업무의 연장이라는 시각에서 성실히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해외출장서 골프·관광 즐긴 공무원 적발

○○부 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과 ○○연구원 연구위원 2명은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의 공금을 들여 출장을 갔다.

이들은 22일 하루만 공무원일정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등 발트3국의 관광명소 위주로 여행을 하고는 출장에서 돌아온 뒤 원래 계획대로 공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스톡홀름에서 오전에 퍼블릭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 박물관과 궁전도 둘러봤다.

(경향신문, 2012.6.19.)

지난 200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카르야 타리나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의 사례는 가까이서 본 호텔 직원의 찬탄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핀란드 대통령은 집에서 쓰던 다리미와 다리미판을 가져와 손수 자기 옷을 다리미질하고, “내 머리 손질은 내가 할 수 있다.”며 호텔에서 제공하는 전문 미용사의 머리 손질도 사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개인의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시민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외국연수나 외국출장을 단순히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무를 빙자하여 사적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34

정치와 거리 두기

관부(官府)는 엄속해야 하는 법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정치 성향을 표현하고 싶을 때

고향 공무원 향우회에 갔다. 이미 고향의 시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선배가 재출마할 계획이란다. 그렇다면 내가 밀어줘야지. 이 선배 덕에 고향에 기반을 둔 형의 토목사업이 승승장구로 발전했는데 은혜에 보답해야지. 고향에서는 나도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목에 힘 좀 주고 다닌다. 조카들 취업이라도 잘되게 하려면 이 선배와 끈끈한 정을 맺어 줘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가 공무원입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어느 성향의 국민에게나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봉사해야 하기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4년마다 단체장 선거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 공무원의 줄서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특정 인사와 결탁하여 공정성을 잃으면 과거와 같이 엽관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의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공무원으로서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사항

-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기관지를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를 원조하거나 방해
-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공공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게재
-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의 제작, 배부, 착용
- SNS를 이용한 정치적 지지활동과 의견표명

정치적 중립은 의무인 한편 권리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인사나 공무 집행에 정치적 간섭과 보복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와 행정을 보호하여 줍니다. 정치적 중립의 근본 목적은 사실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어느 편을 지지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행동으로도 표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당신은 늘 정치적 중립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자주 하는 질문

공무원이 진행하는 모든 업무가 선거를 위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정치적 중립을 신경 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지역축제 등 행사의 초청장에 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단체장의 직명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성명을 게재하는 경우 그 초청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대상자인 시민에게 여비(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 단순히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시민에게 교통편의나 식사, 기타 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후보자의 가족 등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됨.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을 맞아 저소득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함.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면 안됨.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방위협의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그 명의로(직명·성명 표시) 표창장을 손수 주거나 정부포상을 전수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을 전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포상(부상포함)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을 표창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상공회의소가 그 입상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상한 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시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부상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됨.

공직자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 시 주의사항

SNS는 즉각성, 친근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SNS의 이용과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공직자의 SNS 사용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 스스로 자율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직자가 SNS를 이용하면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1. 공직자는 온라인을 통한 모든 활동에 책임을 지닌다.

특히 SNS를 통해 개인정보나 법령상 비공개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른 매체보다 메시지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수정 및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SNS의 부적절한 사용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 그리고 조직 전체에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

2. 사적인 글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부서(기관)를 대표하고 있는 직급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때 공무원으로서 시의 입장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3. SNS를 통해 정치적 지지활동이나 의견표명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SNS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4. 공론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SNS의 모든 콘텐츠는 모든 형태의 매체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에 올리는 모든 내용은 온라인상에 영원히 남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글을 올리기 전에는 논란이 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5. 각종 차별적 발언, 개인적 모욕, 욕설 등은 절대로 사용하지는 안된다.

SNS를 통한 불필요한 논쟁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나의 SNS를 보는 사람도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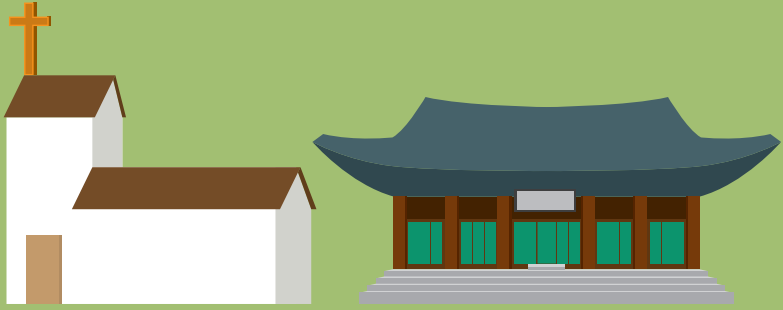
〈출처 :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문화체육관광부) 재구성〉

35

내 신앙만큼 남의 신앙도 중요하다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刑律)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함부로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종교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시청 앞 광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시 직원들만 움직여서는 인력이 모자랄 것 같아 내가 다니는 교회 신도들을 대거 동원할 생각이 다. 마침 교회에서도 부활절 맞이 대전도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바자회도 열고 전도대회도 곁들이면 일거양득 아닌가?

내 신앙만큼 남의 신앙도 소중합니다. 더군다나 전체 국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이라면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직자의 종교 차별 행위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직 임용 과정에서 특정 종교인만 참여시키거나, 거꾸로 배제하는 일,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개인 명함에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표시와 더불어 성경문구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의 경우 종교 차별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 시각에서 종교 편향적이라고 느낄 여지가 있으면 타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특정 종교 편중은 일반성과 보편성,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직자가 해당 기관을 대표하여 일반적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의례적인 인사와 축하, 해당 종교의식 등에 참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적 행동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내 특정 종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하는 종교 편향적 언행 - 근무시간 내 사적 특정 종교 활동 참여 또는 활동 강제 -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자신의 종교의식 강요
종교적 행위가 가능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사업 및 행사 지원 (예: 전통사찰보존법) - 종교 문화재 또는 전통종교문화와 관련한 사업 또는 행사 지원 -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계약에 따른 행정집행 행위 - 종교단체의 자선, 구호활동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사 지원 - 우리 전통문화의 홍보 또는 국민문화 향수 확대와 관련된 행사 지원

관공서가 특정 종교단체에서 나와 커피를 주는 등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종교 차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직자가 그 종교를 홍보하거나 타 종교를 비방하게 되면 종교 편향이 됩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일이 다른 시각에서는 부당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6

음주운전 세 번이면 '아웃'!

술을 끊고 여색(女色)을 멀리하며 노래와 음악을 물리쳐서
공손(恭遜)하고 단정(端正)하고 위엄(威嚴) 있기를
큰 제사(祭祀) 받들 듯 할 것이요, 감히 놀고 즐기므로써
거칠고 방탕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술을 마셨을 때

나는 우리 부서에서도 알아주는 베스트 드라이버. 어
디가 막히고 안 막히는지도 귀신같이 알고 특히 음주
운전 단속 지점도 다 꿰뚫고 있지. 술 몇 잔 마셨다고
내 기민함이 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배포가 생겨 더
신나게 달릴 수 있지. 대리운전? 좀 불안하다. 새로 구
매한 차인데 흠집이라도 나면 어쩐다? 금방 갈 수 있
는 거리인데 시간 뺏기고, 돈 버리고, 그럴 필요 있나?

간혹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마친 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바로 집이 코앞인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음주 후에는 평소보다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될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과속 사고와 졸음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 2회째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하고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최고 징계를 합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 더 엄격한 ‘2진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소주 한 병으로 인한 음주운전 피해비용은 1500만원이다

소주 1병(7잔-혈중알코올농도 0.15%)을 마시고 신호위반으로 전치 4주의 인사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형사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 대략 1500만원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똑같이 마셨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흡수 및 분해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통상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1~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뒤 한 시간 정도가 경과하면 운전 금지 상태인 0.05%의 농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토요일(18.7%)과 일요일(15.9%)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5일제 근무로 금요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말에 차량을 가지고 지인 또는 가족 모임에 갔다가 의지와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살 행위뿐 아니라 살인 행위로 이어집니다. 나와 내 가족과 다른 사람의 삶까지 망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공무원 징계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7

심심풀이가 패가망신에 이른다

시(詩)나 윷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政事)를 아전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큰 잘못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도박의 유혹에 빠질 때

처음엔 단순히 오락이었다. 퇴근 후 심심풀이로 사행성 오락장에 들른 것이 화근이었다. 잃어 봤자 푼돈이다 싶어 재미로 즐겼는데, 어찌다 잭팟이 한 번 터지니 그 희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시 터질 것만 같은 그 순간만 기다려진다. 이제는 잃은 돈이 아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다. 잭팟, 한 번만 더 터지면 딱 끊어 버릴 텐데.

모 연예인이 도박에 빠져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방송 출연도 제지 당한 처지에 놓인 일을 아실 겁니다.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로 도박도 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도박에 중독되었다 할 만큼 익숙해지면 뇌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감조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라도 이처럼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취약할 경우 도박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도박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뇌물의 고리로 이어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한 공무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공사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중독이 아니라고 느끼면서 그저 재미로 도박 업소를 드나들고 있습니까? 단호히 발길을 끊어야 자신과 가정을 지킵니다. 주변의 동료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 위험성을 적극 알려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도박 행각 적발 사례를 볼까요?

1. ○○군청의 한 사무관은 직무관련자 6명에게 5000여만 원을 빌려 총 4회에 걸쳐 카지노 VIP룸을 찾아 빌린 돈을 탕진함
2. ○○시청의 한 사무관은 시장 지시사항을 처리한다고 출장허가를 받은 후 복무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랜드로 감
3. ○○군청의 6급 공무원 A씨는 게임을 하느라 다음 날 출근을 못하게 되자 직원을 통해 전화로 휴가를 신청하고 계속 게임을 즐김
4. ○○시 공무원 B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7~8개 업체로부터 6000여만 원을 받아 수십 차례 ○○랜드 카지노를 출입하고 동료 공무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임
5. ○○시 공무원 C씨는 인근 지역 순시 및 동향파악을 한다며 허위로 출장명령서를 내고 지인 5명과 함께 판돈 60만 원 상당이 오고 간 일명 '세븐오디' 도박을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됨

공무원의 출장지로 ○○랜드가 인기인 모양입니다. 도박 중독은 공무원이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을 의미하고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 한 조각 떼어내고 행복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38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나는 문관(文官)이고 상대가 무관(武官)이라 하여 팔시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잘났고 그는 어리석다 하여 그를 우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나는 나이가 많고 그는 젊다 하여 그를 딱한 듯이 대해서는 안 된다.
엄숙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온순하여 감히 예(禮)를 잃지 않으며,
화평하고 통달하여 서로 끼이고 막힘이 없게 하면, 정과 뜻이 서로
공감하게 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성희롱을 접했을 때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지.” 오늘도 어김없이 회식자리에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다. 평소에도 야근할 때 피곤하다며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뻘인 과장님이 부탁하는 것이니 별것 아닌 듯이 여기고 해줄 수 있지만 여직원인 나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술은 여자가, 안마도 여자가.’를 말하는 박 과장. 혐오감이 느껴지는 말과 행동, 성희롱 맞겠지?

이성에 대해 자신은 친근감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행동이
나 요구에 대해 상대방은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
다. 이는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철저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고 단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8시간을 함께 지내며 일을 하다 보면 이성이
라는 생각을 떠나 동성처럼 직장 동료와 허물없이 지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성 동료에 대한 배려 없는 언행
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애매한 상황의 행동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부하직원을 딸 같다, 아들 같다 하면서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동
-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라며 춤을 강요하는 행동
- 외모를 칭찬하는 척 하면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동
-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성폭력 피해는 낯선 사람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대다수가 선후배, 애인이나 가까운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며 고통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상대방의 피해자가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 자책감에 시달리며 심지어 약물중독에 빠지거나 자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등 화이트칼라 계층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희롱 문제를 피해자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모두의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함께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성희롱 방지를 위해 동료 간 평소 지녀야 할 태도

성희롱은 작지만 민감한 부분에서 발생한다. 하루 중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는 동료 간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신경써야 한다.

- 평소 동료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억지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한다.
-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을 때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자리에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지 않는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면 거부 의사로 받아들인다.
- 상대가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지 않는다.
- 성희롱 때문에 느낀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2.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무엇보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대부분 성희롱 피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거부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우면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해라.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도 좋다.

2.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을 지속하면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직장에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상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또는,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실(행정포털 내)에 상담신청을 하고, 기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4.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밟도록 한다.

退 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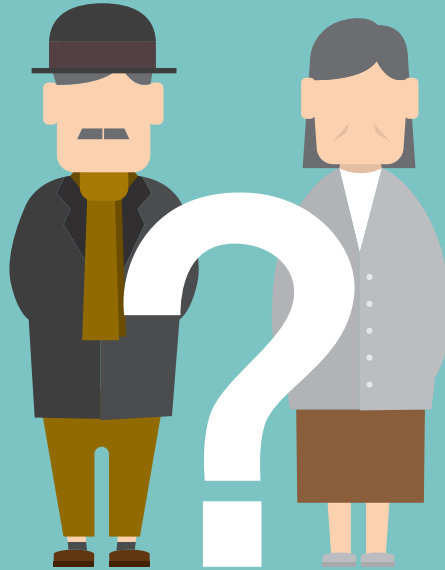
7장 | 퇴직,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39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돌아올 때 뿔뿔치 못한 물건이 하나도 없이 맑고 소박함이 옛날과 같은
것이 으뜸이고, 방편(方便)을 마련하여 종족들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은
그 다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



퇴직을 앞두고 노후가 고민될 때

정년을 앞두고 퇴직 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 평소 업무상 친분을 쌓아 온 용역업체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 새로운 용역 사업을 만들어 자신의 업체에 위탁해 주면 그 대가로 퇴직 후 자신의 업체에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 어차피 퇴직 후의 일이니까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도 않고, 다들 암암리에 퇴직 후 자리를 마련하는데 거절하면 내 노후만 불안해지지 않을까?

퇴직을 앞두고 노후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온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낯선 일에 뛰어들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퇴직하게 되면 담당했던 업무에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에 적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유혹도 많이 따릅니다.

이렇듯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사적인 목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유착 고리의 형성을 미리 방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반드시 뿌리쳐야 합니다.



퇴직 후 부당취업 실제 적발 사례

공무원 A과장은 용역업체 대표 B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애초 계획에 없었던 전화교환원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그 업체에 위탁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퇴직 후 그 업체에 취업할 의도로 채용 조건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격요건을 추가하도록 부탁했다. A과장은 퇴직 후 해당 업체의 소장으로 취업했고 결국 감사팀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이 내렸던 지시에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도 부당 업무 처리로 함께 처벌됐다.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 부패 적발 사례

○○기관은 기관에 몸담았던 퇴직 직원과 장기 임대매장을 수익계약 하면서 다른 임대매장 대비 1/2 수준으로 임대료 특혜를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부당한 사례가 관행처럼 되면 퇴직 후 자리 마련을 위해 미리 특혜를 제공하거나 취업 후 현직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명에 없이 그저 가늘고 긴 생명력을 유지하기보다는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헌신하는 삶이 더욱 아름다운 퇴직자의 뒷 모습 아닐까요?**



1.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퇴직공직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취업이 제한된다.

1. 서울시 공무원의 취업제한 범위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제3조)

-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 감사 업무,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업무(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업무),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2.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동법 제17조)

3. 업무관련성의 의미는 퇴직 전 5년 동안 아래 업무를 했을 때

(동법 제17조)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그 밖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 (동법 제17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기업체, 법인·단체,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 귀감 사례 - 퇴직 후 봉사활동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지를 고민”

3급으로 퇴임한 A씨는 5년째 호스피스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들이 모인 이곳에서 그는 이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봉사를 제2의 인생으로 택했다. A씨는 “공무원 생활 38년이 나와 가족, 나라를 위한 시간이라면, 은퇴 후는 내 결의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차량운행비 같은 실비만 받는다. 38년간 공직에서 봉사한 덕분에 받는 200만 원대 후반의 연금이 든든한 편이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노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퇴직 전부터 가치 있게 살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봐야 한다”고 A씨는 말한다. 적어도 퇴직 5년 전부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연금 이외의 경제적인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지 꼼꼼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40

존경받는 공직자의 뒷모습

맑은 선비의 돌아갈 때의 행장은 모든 것을 벗어 던진 듯 조촐하여
낮은 수레와 야윈 말인데도 그 산뜻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스며든다.

〈다산 정약용 선생〉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공무원을 퇴직하고, 알고 지내던 시공업체에 임원으로 앉게 됐다. 퇴직 전 담당했던 일은 아니지만 시청 내 관련 업무 담당자가 절친한 후배다. 그 친구가 공무원 생활에 힘들어할 때 조언도 해가며 멘토 역할을 해 줬으니 이제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새로 부임한 임원으로서 뭔가 과시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오래 버틸 텐데. 우선 함께 식사 한 끼 해야겠다.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공무원으로서 지냈던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현직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직자가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영리법인이나 협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주로 과거 인맥을 통해 계약·허가 업무 등에 도움을 얻는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무마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불법, 편법 재취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유착관계를 낳고 비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밖의 퇴직공직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규정

본인 직접처리업무 영구 취업금지(제18조의2 제1항)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업 금지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취업제한 관련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과 동일)



재직자의 취업청탁행위 제한(제18조의5)	
대상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내용	재직자는 재직 중에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 청탁 금지 기관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로 취업 알선 금지
'1+1' 업무취급제한(제18조의2 제2항)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장·차관,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제외)
내용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퇴직 후 취업한 사기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한

현직 공무원으로서는 얼마 전까지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람이 찾아와 부탁하면 모든 척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직 생활을 통해 쌓아왔던 상사에 대한 존경이 로비스트에 대한 싸늘한 조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모습, 청렴한 모습으로 물러날 때에 공직자로 보낸 지난 세월의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느 퇴직 공직자의 편지

공직 생활을 마친 어느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 글을 소개한다.

공직을 떠나면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몸담은 지 30년 2개월, 이렇다 할 무엇하나 남겨 놓은 것도 없이 평범하게 정년(공로연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스쳐 간 선배님들 또 후배들의 모습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이 뇌리를 스쳐 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듯이 지금 이 시간,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 중에 또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퍼온 글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쉽게 행할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무언가 느낌을 던져 주는 글이라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5-3=2오, 2+2=4’라는 뺄셈과 덧셈의 산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5 오해도,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세 번만 생각하면, 2 이해가 되고, 2 이해와, 2 이해가 만나면, 4 사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

기도 합니다.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견·편견·이해의 부족에서 생기고 결국 오해는 좋은 결과보다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해하다'는 영어로 'Understand'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밑에 서다'라는 뜻으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알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삶은 가까운 타인의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낚시바늘의 꼬부라져 빠진 부분을 '미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걸린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미늘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론 선하고 성실하게 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여 마음 한구석에 미늘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버리시고 앞서 말씀드린 덧셈과 뺄셈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각자의 발전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러한 미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남긴 말과 같이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꼭 소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공직자가 간직해야 할 다섯 가지 가치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도 같아서 항상 살펴보지 않으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항상 바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자기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위해 서울시 공직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다섯 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직자는 항상 시민을 섬깁니다.

공무원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그들과 함께 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직자는 청렴한 마음가짐을 간직합니다.

청렴이란 마음이 깨끗하고 재물을 탐내는 일이 없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단호히 거절하는 태도를 청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직자는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공명정대함이란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공평하고 올바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사회의 신뢰는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을 할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직자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씬씀이를 절약합니다.

모든 세금의 주인은 바로 시민입니다.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라도 내 것처럼 아껴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공직자는 바른 몸가짐을 가집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항상 시민의 눈을 두려워하고,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며, 품행에 절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 책 〈新목민심서〉의 전부입니다.

작고 가벼운 책이지만, 그 무엇보다 무겁게 가슴 속에
지닐 수 있길 바랍니다.



에필로그

신목민심서는 2012년 2월, 서울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들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서울시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한 권에 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행정포털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윤리경영 우수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별관 5동 8층 옥탑창고를 사무실로 꾸미고 본격적인 TF팀을 가동했습니다. 한쪽 벽에 다산 정약용선생의 사진을 붙여두고 목민심서를 읽으며, 그 분이 꿈꾸신 공직사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2012년 6월까지 공직윤리에 관한 책들과 수많은 감사보고서, 신문 스크랩, 각종 법령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며 진행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공직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가려 뽑아 공직 임용시부터 퇴직 이후까지 갖추어야 할 윤리기준인 <신목민심서> 초고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 7~8월간 초고를 바탕으로 (주)봄바람과 함께 수십 차례의 퇴고와 수정을 통해 7개 주제, 40개의 상황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11명의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모여 한 줄 한 줄 함께 읽고, 더 효과적인 구성, 더 좋은 표현을 고민해 책을 완성했습니다.(정학조 감사담당관, 황민 감사1팀장, 홍남기 감사3팀장, 김정윤 감사5팀장, 전영주 기술감사팀장, 윤석환, 임지훈, 김은희, 백광인, 김충희, 이순영 주무관)

이렇게 직원들의 참여 속에서 완성된 이 책이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닿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감사관 조사담당관)02-6360-48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 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



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부서 및 단위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실·국·본부와 이에 준하는 부서 및 기술심사담당관

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이하 사업소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국에 포함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각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관

나. 행동강령책임관: 해당 소속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 다만, 기술심사담당관 등 4급 공무원이 없는 직속 기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5.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속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제정·시행)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이하 “지시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 공무원은 제1항의 지시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지시등을 한 공무원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명한 후 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관련 상급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지시등에 따르지 않거나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하는 공무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① 공무원은 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전·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직원 상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제1항에 위반되는 금품등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즉시 반환 또는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13조(업무전문성 등)

-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1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확인·발급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강의·회의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 내용·대상·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3.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나.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자체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18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 ①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시장 또는 소속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자 조치

제19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소속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이 규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0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은 전 교육 과정에 행동강령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이 멸

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 등으로 제공되어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⑥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6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	200	120	100	

※ 동 기준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목민심서

품격있고 지혜로운 서울시 공직자가 되는 법

발행일	2012년 9월 25일
발행	서울특별시
발행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기획/편집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주)봄바람(http://www.bombaram.net / 02-3142-0588)
편집인	황상길 감사관 정학조 감사담당관 박범 식품안전과장(전 감사총괄팀장), 임지훈, 이순영, 김지광 주무관 (주)봄바람 - 김예니, 김보미, 김석진
디자인	10cross
디자이너	김광혁, 민지홍
인쇄	(주)이펙피앤피

©서울특별시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봄바람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627-14